

2015년 하반기
제6대 양산시의회 소식지

6호

양산시민과 함께 나누는

건강한 소통



양산시의회
YANGSAN CITY COUNCIL

소통하는 열린의정! 역동적인 희망의회!

30만 양산 시민을 위해 다시 시작합니다.
실천하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양산을 위해
양산시의회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의정
양산의 내일을 바꾸는 희망의정

바로 양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양산시의회의 모습입니다.

글 심는 순서
2015 하반기
양산시의회 소식지 소통 6호

인사말	/ 04
제6대 양산시의회 의원	/ 05
양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 06
의원의 임무 및 역할	/ 07
2015년 전반기 의정활동 결산	/ 09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 10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12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 20
의원발의 조례	/ 22
2015년도 상반기 의안심사	/ 23
-제137회 임시회	/ 23
-제138회 임시회	/ 24
-제139회 정례회	/ 33
5분 자유발언	/ 38
시정질문	/ 51
건의안 및 결의안	/ 60
의정활동 이모저모	/ 64
의회 청사배치도	/ 68



인사말 | 한옥문 의장

열린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합리적인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존경하는 30만 양산시민 여러분 !

지난 7월 1일로 양산시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양산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5년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4년 째 되는 해로서 양산시가 30만 인구의 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인구 30만 중견도시로서 우리 양산시가 동부경남의 거점도시에서 부산시, 울산시를 잇는 삼산의 중심 도시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청년기를 맞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이끄는 양수레바퀴의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시민 행복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제자족도시로 지역발전의 호조를 맞은 이 때 힘차게 달려 나가야 하겠습니다.

전국에서도 가장 경쟁력있고 역동적인 젊은 도시로 많은 잠재력을 바탕으로 더 큰 발전의 실현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입니다.

16명의 양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선수와 당적을 떠나 오직 양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다는 큰 명제 아래 사소한 대립과 갈등은 버리고 열린 마음

으로 한 뜻이 되어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며 이를 통해 시민의 공감과 신뢰 속에 시정을 이끄는 강력한 추진 동력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양산시의회는 지난 1년간 정말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1년 전 시민 여러분의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왔습니다.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더 좋은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으며, 시민 여러분이 공감하는 정책을 세우기 위해 현장을 확인하고 또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지난 1년 간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양산시정이 시민 위주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시정 전반에 대하여 더욱 꼼꼼히 살피고 효율적인 견제는 물론이고 시정의 동반자로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양산시의회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는 소통의정을 목표로 삼고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30만 양산시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단

Chairman & Vice chairman



의장 한 옥 문
(중앙·삼성)



부의장 정 경 효
(상북·하북)

제6대 양산시의회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Council Steering Committee



위원장 박일배
(평산·덕계)



부위원장 이 중 희
(상북·하북)



위원 김 중 희
(중앙·삼성)



위원 이 기 준
(동면·양주)



위원 차 예 경
(비례대표)

기획행정위원회

Planning & Administrative Committee



위원장 김 효 진
(물금·원동·강서)



부위원장 김 중 희
(중앙·삼성)



위원 박 일 배
(평산·덕계)



위원 이 중 희
(상북·하북)



위원 이 상 길
(동면·양주)



위원 이 기 준
(동면·양주)



위원 박 대 조
(서창·소주)



위원 이 정 애
(비례대표)

도시건설위원회

City & Construction Committee



위원장 이 상 정
(평산·덕계)



부위원장 이 호 군
(동면·양주)



위원 박 말 태
(물금·원동·강서)



위원 이 채 화
(서창·소주)



위원 정 경 효
(상북·하북)



위원 임 정 섭
(물금·원동·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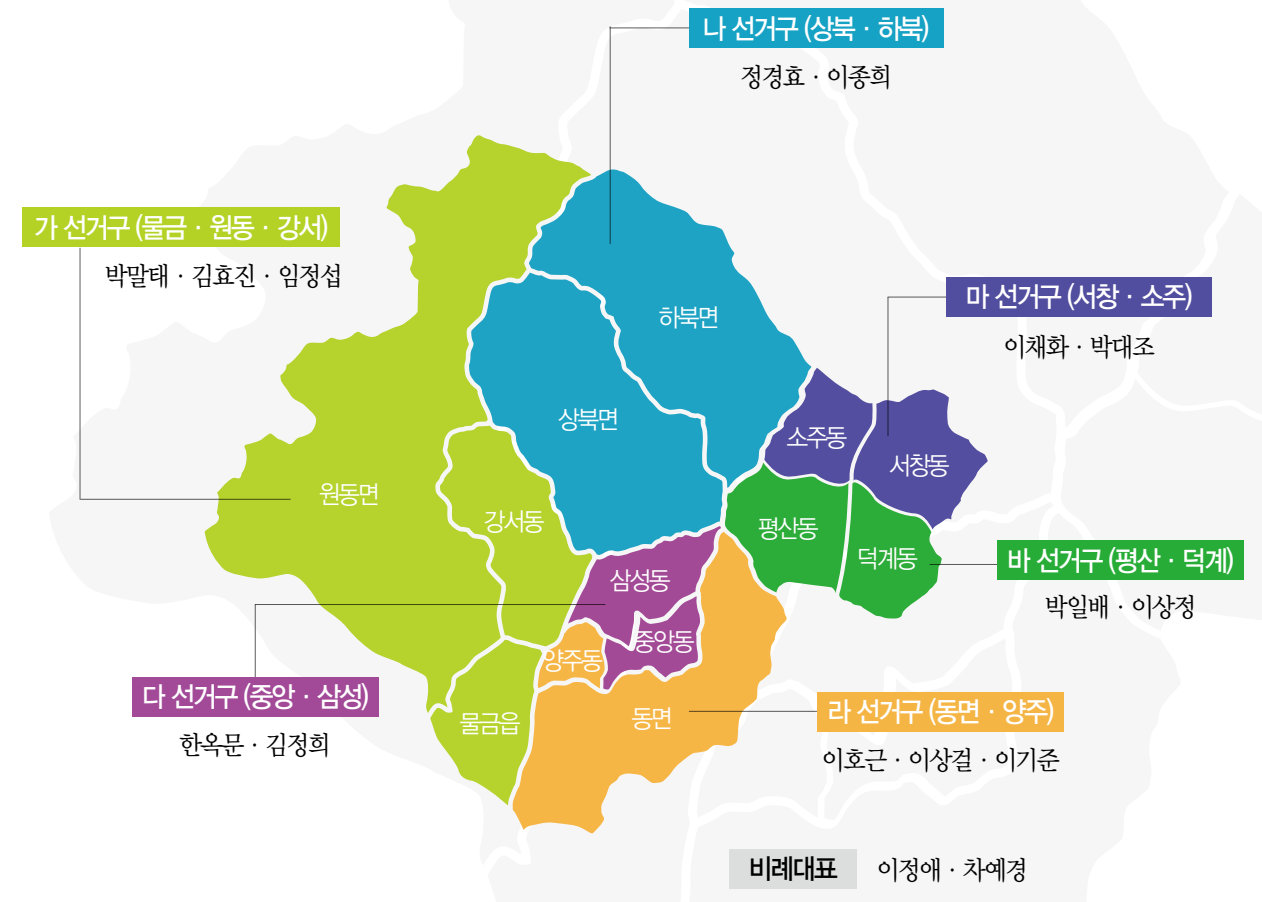
위원 차 예 경
(비례대표)

양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 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의원의 임무 및 역할

의원의 임무

-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니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무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한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없다.

의원의 역할

-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의 정책결정자, 갈등 조정자, 행정 감시자이며,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및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승인 등의 권한을 가지며,
-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하고 주민이 제출한 청원 및 진정을 접수·처리하며,
- 조직운영에 있어 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결정권 등 의사운영의 자율권과 의장·부의장 불신임권, 질서유지권, 의원징계권 등의 내부운영에 관한 자율권을 가진다.



"양산의 발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2015년도 전반기 의정활동 결산

25일간 개회, 조례안 및 예산결산안 등 안건 51건 처리
현장확인과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양산시의회는 2015년 전반기 동안 총 25일간 개회하여 5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양산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회기운영 현황으로는 2015년 3월 11일 제13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6월 26일 제139회 제1차 정례회까지 임시회 8일, 정례회 17일 등 25일동안 회기를 운영하였으며, 의안처리 현황으로는 조례 30건, 예산안·결산 5건, 동의·승인안 1건, 건의·결의안 5건, 일반안건 10건 등 총 51건으로서 내실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시정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제137회 임시회에서 차예정 의원의 시민 안전과 직결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 임정섭 의원의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재활시설의 장애인 복지관 이관 대책 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펼쳤으며, 이상걸 의원은 제137회 임시회에서 무상급식사업 중단과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시의 입장 표명 및 대책 요구를, 제138회 임시회에서 박대조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증원 및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을, 김정희 의원은 도시철도 운행에 따른 교통수요 예측과 재정투입

최소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과 건설 필요성 재검증을, 제1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효진 위원장은 무상급식주체를 바로 알자로, 이기준 의원은 불법광고물 근절 등의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현장행정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사무감사시 상임위원회별 현장확인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현장확인을 펼쳐 주민숙원사업 등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촉구하였다.

6월 11일부터 9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시정·처리요구 82건, 건의 83건 등 총 165건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고리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에 따른 시민의견 수렴 촉구 결의안을 비롯하여 고리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0km설정 촉구 건의안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건의하였다.

또한, 비회기 기간에는 한옥문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협의회를 9번 개최하여 의회운영에 따른 협의사항 처리와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주민 건의사항 21건을 접수하여 민원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회기 및 안건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회 기	안 건 처 리 현 황					
		계	조례·규칙안	예산안·결산	동의·승인안	건의·결의안	일반안건
계	30일간	51	30	5	1	5	10
제137회 임시회	2015.3.11.~3.13(3일간)	4	1			2	1
제138회 임시회	2015.4.27.~5.1(5일간)	32	18	4	1	3	6
제139회 정례회	2015.6.10.~6.26(17일간)	15	11	1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난 5월 1일 제138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 7,600여억원 승인
동면체육공원, 웅상전통문화교육관, 황산공원 횡단육교 사업 등 반영

양산시의회는 2015년 5월 1일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일반회계 6,659억2,258만8,000원, 특별회계 940억9,339만8,000원 등 모두 7,600억1,598만 6,000원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했다.

양산시의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을 위해 전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 및 공유 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희 의원)를 구성했으며, 상임위원회별 사전심사와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양산시의회는 양산시가 제출한 제1차 추경예산안 7,611억8,644만8,000원 가운데 폐수종말처리시설 신규위탁 미시행 등 항목 하나하나마다 예산안 심의에 신중을 기해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분야 11억7,046만2,000원, 세출 분야 30억7,216 만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으며, 특별회 계 세입 분야는 원안 가결하고 세출 분야는 1억7,372만

2,000원을 삭감한 뒤 수정 의결했다.
이번에 편성된 주요사업과 예산액은 동면체육공원 25 억원, 웅상전통문화교육관 건립 10억원, 복지재단 출연 금 21억원, 공영차고지 조성 6억원, 황산공원 횡단육교 설치 10억원, 평산동 산사태 복구비 26억원 등이 반영됐 다. 반면 세출 분야 주요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양산정신 선양사업 표지석 및 안내판과 조형물 설치 1억1,000만 원, 엄정행 음악길 조성 1억원, 세계정신문화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원, 통도사 축서암 대웅전 증·개 축 및 주변 정리 10억원, 다방천 준설공사 1억원, 웅상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단속카메라 설치 6,000만원, 양산 천 강이마을 쉼터 조성공사 4,000만원 등이다.

김정희 특별위원장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투자 효율성을 감안했다” 며 “당장 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부분에 방만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재원의 효과적인 배분을 통해 시민복지 증진에 초점을 맞춰 심사했다”고 밝혔다.

●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분	회 계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 감액	증감률
위원회별	계	761,186,448	714,987,653	46,198,795	6.46%
	일반회계	667,093,050	627,996,807	39,096,243	6.23%
	특별회계	94,093,398	86,990,846	7,102,552	8.16%
의회운영위원회	소 계	2,626,026	2,606,450	19,576	0.75%
	일반회계	2,626,026	2,606,450	19,576	0.75%
	특별회계	-	-	-	-
기획행정위원회	소 계	375,149,437	358,742,172	16,407,265	4.57%
	일반회계	372,590,714	356,194,790	16,395,924	4.60%
	특별회계	2,558,723	2,547,382	11,341	0.45%
도시건설위원회	소 계	383,410,985	353,639,031	29,771,954	8.42%
	일반회계	291,876,310	269,195,567	22,680,743	8.43%
	특별회계	91,534,675	84,443,464	7,091,211	8.40%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 내역

- 세입분야

(단위 : 천원)

부 서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조정액
		1건	1,170,462		1,170,462
정 수 과	기타회계전입금(721-03)	공단관리특별회계 전입금(환경관리과)	1,170,462		1,170,462

- 세출분야

(단위 : 천원)

부 서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조정액
		38건	15,085,054	3,072,162	12,012,892
기획예산담당관	309-01(공사공단경상전출금)	시설관리공단전출금(양산지방공단폐수처리시설시정출금)	12,066,414	1,165,462	10,900,952
	404-01(공사공단자본전출금)	시설관리공단전출금(양산지방공단폐수처리시설시정출금)	111,940	5,000	106,940
공보감사담당관	201-01(사무관리비)	신문(방송)광고	150,000	50,000	100,000
행정과	802-02(시도비보조금반환금)	도비집행잔액 반환금	15,100	10,100	5,000
문화관광과	201-01(사무관리비)	양산정신 선양사업 번역, 자문위원회 개최	16,600	16,600	-
	401-01(시설비)	양산정신 선양사업 표지석 및 안내판 설치, 조형물 설치	110,000	110,000	-
	401-01(시설비)	엄정행 음악길 조성	100,000	100,000	-
	207-01(연구용역비)	세계정신문화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100,000	100,000	-
	402-01(민간자본사업보조)	통도사 축서암 대웅전 중개축 및 주변정비	1,000,000	1,000,000	-
도로과	시설비401-01	물금가촌도시계획도로(소3-107호선,소3-103호선)개설	25,000	25,000	-
	시설비401-01	평산도시계획도로(소2-118호선)개설	80,000	80,000	-
	시설비401-01	농어촌도로(하북309호) 확포장공사	60,000	60,000	-
건설과	시설비401-01	다방천 준설공사	100,000	100,000	-
교통행정과	시설비401-01	웅상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단속카메라 설치	60,000	60,000	-
도로과	시설비401-01	웅상도시계획도로(대2-4호선)개설	1,050,000	150,000	900,000
건설과	시설비401-01	양산천 강이마을 쉼터 조성공사	40,000	40,000	-
			7,047,934	173,722	6,874,212
환경관리과	인건비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244	△6,038	16,282
	사무관리비 201-01	일반수용비	912	△912	1,824
	공공운영비 201-02	시설장비유지비	5,500	△2,500	8,000
	재료비 206-01	정원수 관리약품 구입	640	△640	1,280
	사무관리비 201-01	운영수당	2,100	△1,050	3,150
	공공운영비 201-02	공공요금및 제세 외	4,440	△4,440	8,880
	공공운영비 201-02	공공요금및 제세 외	15,170	△14,970	30,140
	여비 202-05	공무원 교육여비	1,200	△1,200	2,400
	일반예비비 801-01	예비비관리	4,414,834	76,708	4,338,126
	특정업무경비 204-03	대민활동비	3,600	△2,400	6,000
	사무관리비 201-01	일반수용비	38,756	△6,768	45,524
	공공운영비 201-02	시설장비유지비 외	517,900	△517,900	1,035,800
	사무관리비 201-01	일반수용비	6,000	△6,000	12,000
	공공운영비 201-02	연료비	1,500	△1,500	3,000
	재료비 206-01	폐수처리약품구입 외	333,806	△160,794	494,600
	인건비 101-01	보수	321,009	△170,640	491,649
	기타직보수 101-02	일반임기제	21,320	△21,181	42,501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1-03	폐기물운반 및 폐수처리보조 인부임	121,521	△103,015	224,536
	사무관리비 201-01	일반수용비 외	33,380	△38,300	71,680
	공공운영비 201-02	공공요금및제세	2,760	△2,760	5,520
	여비 202-01	국내여비	20,880	△10,440	31,320
	기타회계전출금 701-01	폐수처리시설위탁운영 전출금	1,170,462	1,170,462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6월 11일~19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지난해 양산시정 전반에 대해 점검
지난 1년 의정활동 경험과 시민 대표라는 책임감으로 본연의 역할 다해

양산시의회가 제13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5년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양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청 본청과 담당관·과·팀, 도시개발사업단과 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시립박물관·시립도서관, 웅상출장소·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등 지난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양산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로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감사보고서 작성 등을 진행했으며, 깊이 있는 감사를 위해 감사 기간 전부터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6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양산시복지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기관과 남락마을 공원(체육) 조성 사업장과 하북스포츠파크 등 사업현장을 방문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시설별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양산시의회 개원 이후 두 번째로 열린 만큼 시의원 전원이 지난 1년의 경험과 의정활동을 통해 자질이 향상됐고, 시민 대리인으로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양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랄한 지적으로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세출예산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에 대해 집행이 불가한 예산은 추경 때 삭감 처리하고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통해 조속히 법규를 정비할 것 등을 지적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반값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와 소통이 부재한 점과 대형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것과 7호 근린공원 내 디자인센터를 애초 계획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철저히 지킬 것 등을 주문했다.

그 결과 양산시의회는 시정·처리요구 82건, 건의 83건 등 모두 16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감사보고서를 채택해 집행부 견제기구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

한옥문 양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지체 없이 개선점을 찾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시정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양산시에 당부했다.

● 기획행정위원회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

실과별	처리 의견		
	계	시정·처리요구	건의
합계	85	27	58
공통	4	1	3
기획예산담당관	4	2	2
공보감사담당관	6	3	3
행정국	행정과	11	3
	세무과	3	1
	징수과	1	-
	회계과	5	-
	민원지적과	1	1
	정보통계과	4	-
복지문화체육국	주민생활지원과	4	2
	사회복지과	9	3
	여성가족과	4	2
	문화관광과	5	2
	교육체육과	6	2
시립박물관	2	1	1
시립도서관	4	2	2
웅상출장소	5	1	4
시설관리공단	5	1	4
읍·면·동	2	-	2

소관부서	지적사항	처리 의견
공통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	시정·처리요구
	기금사업 활성화	시정·처리요구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시정·처리요구
	민간자본사업 보조 관련	건의
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 상환 및 발행방법 개선	건의
	예비비 승인 및 집행 철저	시정·처리요구
	풀 예산 편성 금지	시정·처리요구
	의회, 집행부 간 소통강화	건의
시설관리공단	대운산자연휴양림 양산시민을 위한 혜택 발굴	건의
시설관리공단, 도로과, 산림공원과	대운산자연휴양림 입구도로 확장	시정·처리요구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 내 입주불가 단체 정리 재촉구	시정·처리요구
시설관리공단, 교육체육과	종합운동장 장기주차 중인 대형버스, 화물차 정리	시정·처리요구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직원 고용승계 문제	시정·처리요구
공보감사담당관	양산시보 부수 확대 및 배부방법 개선	건의
	소송업무 철저	시정·처리요구
	양산시정 홍보 방법 다각화	건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시정·처리요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소 관 부 서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공보감사담당관	조례안 검토 철저	시정 · 처리요구
	규제완화 발굴 추진	건의
행 정 과	면 단위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검토	건의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규정 준수 촉구	시정 · 처리요구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 시기 변경 검토	시정 · 처리요구
	주민자치센터 우수한 프로그램 개발 및 다변화 재촉구	시정 · 처리요구
	주민자치회 시행 대비 사전준비 및 계획 수립 철저	건의
	주민자치센터 인적피해 보상규정 및 보험보장 가이드라인 마련	건의
	국제교류지방문 예산 편성 철저	시정 · 처리요구
	휴직자 등 결원에 따른 공무직 활용 방안 강구	시정 · 처리요구
	격무부서 인센티브 반영 촉구	시정 · 처리요구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 촉구	시정 · 처리요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시정 · 처리요구
	지방세 부과 업무 철저	시정 · 처리요구
세 무 과	고지서 제작시 계약 방법 변경 검토	건의
	관내 대중 골프장 운영 현황 조사 및 재산세 부과 철저	시정 · 처리요구
징 수 과	소액 체납액 적극 징수	시정 · 처리요구
회 계 과	관용차량 관리 철저	시정 · 처리요구
회계과, 민원지적과	미활용 사유지 관리 철저	시정 · 처리요구
회 계 과	불법 하도급 감독 철저	시정 · 처리요구
	분리발주 금지	시정 · 처리요구
	금촌마을 공공청사 부지매입 관련	시정 · 처리요구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철저	건의
정보통계과	도청방지시스템 도입 사업 재검토	시정 · 처리요구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 절감 대책 마련	시정 · 처리요구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구입 기준 수립	시정 · 처리요구
	경로당 복지시스템 재점검 재촉구	시정 · 처리요구
주민생활지원과	희망울타리사업 지속 발전	건의
	기초생활수급 탈락 관련	건의
	보조금 반납액 과다	시정 · 처리요구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체불 관리 철저	시정 · 처리요구
사회복지과	장애 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지속 추진	건의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철저	시정 · 처리요구
	독거노인 응급안전 지역센터사업 수혜자 확대	건의
	장애인민원상담전화 활성화 대책 마련	시정 · 처리요구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업무 소홀	시정 · 처리요구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기준 수립	시정 · 처리요구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지도 · 감독 및 정산 철저	시정 · 처리요구
	복지재단 보수규정 변경 촉구	건의
	영세민 전세자금대출 관련	시정 · 처리요구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지도 · 점검 철저	시정 · 처리요구
	관내 기업체 직장어린이집 설치 홍보	건의

소 관 부 서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여성가족과	장난감 은행 사업 확대 검토	건의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개선	시정 · 처리요구
문화관광과	신평중앙길 가로경관개선사업 보완	시정 · 처리요구
	원동매화축제 운영 개선 조치	시정 · 처리요구
	종합축제 개최 방안 검토	건의
	보조금 교부 철저	시정 · 처리요구
	우불산성 복원 및 주변 정비사업 조기 시행	건의
	거점초 영어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	시정 · 처리요구
교육체육과	원어민보조교사 학교배치지원 제도 개선	시정 · 처리요구
	인조잔디 체육시설물 유해성 검사 실시	시정 · 처리요구
	양산전국하프마라톤 대회 주관사 입찰자격 개선	건의
	시민평생교육원 운영 개선	건의
	체육시설 표지판 설치 보완	시정 · 처리요구
	역사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 확대 검토	건의
시립박물관	법기리 도요지 훼손 방지 대책 수립	시정 · 처리요구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명칭 통일 방안 협의	건의
	작은도서관 장서 수장 공간 확보	시정 · 처리요구
	워터파크 이동문고 지도 · 점검 철저	시정 · 처리요구
	영어도서관 운영 활성화	건의
	웅상출장소총무과	웅상지 배부 철저
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	어린이집 법규 위반사항 홍보 철저	시정 · 처리요구
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	각종사업 설계변경 최소화	시정 · 처리요구
	평산 어린이 공원 조성 관련	시정 · 처리요구
	불법광고물 단속철저	시정 · 처리요구
읍 · 면 · 동	읍면동 생활불편개선 사업비 관련	시정 · 처리요구
읍 · 면 · 동	수의계약시 특정업체 편중 개선 조치	시정 · 처리요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시건설위원회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

실 과 별		처 리 의 건		
		계	시정 · 처리요구	건의
합 계		80	55	25
경제주택환경국	경 제 기 업 과	6	5	1
	건 축 과	7	4	3
	원 스 톱 팀	0	0	0
	환 경 관 리 과	5	2	3
	자 원 순 환 과	4	4	0
안전도시건설국	안 전 총 괄 과	3	1	2
	도 시 과	3	2	1
	도 로 과	9	7	2
	건 설 과	5	5	0
	교 통 행 정 과	6	5	1
	산 림 공 원 과	4	2	2
도시개발사업단	도 시 개 발 과	2	2	0
	공 공 시 설 과	3	2	1
	산 단 조 성 과	4	2	2
보 건 소	보 건 사 업 과	0	0	0
	보 건 위 생 과	2	2	0
	웅상보건지소	0	0	0
농업기술센터	농 정 과	8	5	3
	농 업 기 술 과	4	3	1
상하수도사업소	수 도 과	2	0	2
	하 수 과	1	0	1
차량등록사업소		0	0	0
기 타	문 화 관 광 과	2	2	0

소 관 부 서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경제정책과	테크비즈타운 및 첨단하이브리드 사업 추진상의 문제	시정 · 처리요구
경제정책과(건축과)	디자인센터 건축 시 하도급업체에 대한 식대 및 장비대금 미결제 민원 처리독려	건의
경제정책과	지곡마을LPG 소형탱크 보급사업 마무리 철저	시정 · 처리요구
	산단무료통근버스 이용증대를 위한 대책 마련	시정 · 처리요구
	실효성 있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발굴	시정 · 처리요구
	사회적기업 관리 철저	시정 · 처리요구
건 축 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로 전환	시정 · 처리요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지도점검 철저	건의
	아파트 상가 입주자 모집 계약금반환 적정 시일 변경	건의
	반값아파트 사업추진 과정 질타	시정 · 처리요구
	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 검토	건의
	7호공원내 디자인센터 건축과 관련	시정 · 처리요구
	디자인센터 사용용도(전시장) 관련	시정 · 처리요구

소 관 부 서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환경관리과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 사업 홍보 철저	건의
	어곡폐수종말처리장 관리실태 개선 방안 강구	시정 · 처리요구
	폐수종말처리장 전문 인력 확보	시정 · 처리요구
	천성산 습지 보존을 위한 용역 검토	건의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 검토	건의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조속 집행	시정 · 처리요구
	바이오가스화시설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당부	시정 · 처리요구
	바이오가스화시설 부식되기 쉬운 밸브 교체	시정 · 처리요구
자원순환과(농정과)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생산된 퇴비 관내농가 공급	시정 · 처리요구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맞게 적정 집행	시정 · 처리요구
	메르스(MERS)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대처	건의
	CCTV 관리 철저	건의
도 시 과	테크비즈타운 및 첨단하이브리드 사업추진 중 잔여지에 대한 대책마련	시정 · 처리요구
	예산 운용의 효율화 요구 (2030 양산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시정 · 처리요구
	평산동 산사태 복구공사 추진 철저	건의
도 로 과	간급도로 유지관리비 적정 집행	시정 · 처리요구
	찾은 설계변경 및 공사 기간 지연 지양	시정 · 처리요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 매수 후 미처리건 조속히 조치	시정 · 처리요구
	한성아파트~동원과학기술대학간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이월	시정 · 처리요구
	농어촌도로 102호선 가각정비 개선사업 사고이월 부적정	시정 · 처리요구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유도위한 방안 검토	건의
	웅상지역 도로과 소관 업무 웅상출장소 이관 검토	건의
	다방도시계획도로(소2-115호선) 사전검토	시정 · 처리요구
	교통도시계획도로(소2-71호선) 사업비 목적 외 사용	시정 · 처리요구
건 설 과	양산천(무풍교~청류교)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비 예산(통계목) 집행 부적절	시정 · 처리요구
건설과(원동면)	신촌2 배수펌프장 제진기 고장 수리 및 기간제 채용 안전	시정 · 처리요구
건 설 과	포괄적 예산 이월 부적정	시정 · 처리요구
	황산문화체육공원 공원관리 철저	시정 · 처리요구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재조정	시정 · 처리요구
교통행정과	효율적인 시내버스 노선체계 수립	시정 · 처리요구
교통행정과(시설관리공단)	양산성당 앞 공영주차장 부지 활용방안 검토	건의
교통행정과 (시설관리공단교육체육과)	양산종합운동장 대형화물차량 상습 불법주차 근절방안 마련	시정 · 처리요구
교통행정과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 관리 철저	시정 · 처리요구
	교통 취약지 택시 할증 요금 조정	시정 · 처리요구
	브랜드 택시 사업 통합 방안 강구	시정 · 처리요구
산림공원과	재선충 피해 고사목 톱밥으로 재활용 사업 추진 검토	건의
	면밀한 공원조성 계획수립과 집행 촉구	시정 · 처리요구
	숲해설가를 활용한 산림서비스 증대	건의
	상업지역 가로수 정비	시정 · 처리요구
도시개발과	도시철도 양산선(노포~양산) 사업추진에 안전	시정 · 처리요구
	도시철도 양산선(노포~양산) 역사 조정 검토	시정 · 처리요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소 관 부 서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공공시설과(교통행정과)	석산신도시 학교부지 화물차량 불법주차 근절	시정 · 처리요구
공공시설과	사송보급자리주택사업 조속 추진	건의
	하복스포츠파크 축구장 배수상태 확인 후 준공 당부	시정 · 처리요구
산단조성과	토지거래허가구역제 시행 검토	건의
	양산토정일반산업단지 시유지 포함 부적절	시정 · 처리요구
	양산토정일반산업단지 추진 철저	시정 · 처리요구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속 추진 당부	건의
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응상보건지소)	메르스(MERS)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대처 주문	시정 · 처리요구
보건위생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적정인력 배치	시정 · 처리요구
농 정 과	어업허가 관련 관리 철저	시정 · 처리요구
	삼량주살 포장재 지원시범사업 관리 철저	건의
농정과(건설과)	매실 농가 지원 방안 검토	시정 · 처리요구
농 정 과	유기질 비료 공급 철저	시정 · 처리요구
	양산농산물유통센터 내 자판기 설치 국가유공자 우선조치	시정 · 처리요구
	양산농산물유통센터, 지역 농산물 판로 확보	시정 · 처리요구
	농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검토	건의
농정과(자원순환과)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생산된 퇴비 관내농가 공급	건의
농업기술과	원동 매실 축제 추진 철저	시정 · 처리요구
	초화류 육묘장 이전 방안 마련	건의
	초화류 및 국화 재배인력 업무 연속성 필요	시정 · 처리요구
	딸기 우량종묘 시범사업 관리 철저	시정 · 처리요구
수 도 과	유수율 제고사업 적극 추진 당부	건의
수도과(하수과)	수의계약시 관내업체 계약 당부	건의
하 수 과	BTL사업 하자보수 철저	건의
문화관광과	부당 청소요금 징수 관련자 엄벌	시정 · 처리요구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철저	시정 · 처리요구

‘단디’ 하는 현장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안전한 도시, 경쟁력 있는 양산시를 위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직접 검증하여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이월사업비 · 집행잔액 과다, 국 · 도비 보조금 관리 소홀 등 지적

양산시의회는 지난 2015년 6월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1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2014년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했다.

2014년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8일 양산시장이 양산시의회에 제출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돼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쳤다.

최종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도 세입결산액은 8,420억4,8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7,533억9,800만원이며,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886억5,000만원이었다. 또한 세출결산액은 7,091억7,6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이 1,328억7,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다음 연도 이월액이 736억2,400만원에 국 ·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4억2,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538억2,000만원이었다.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상걸 의원은 2014년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에서 과다한 이월사업비와 집행잔액 과다, 국 · 도비 보조금

관리와 집행 소홀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상걸 위원장은 “매년 과다한 이월액이 실질적인 가용재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예산이 잠식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월예산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보다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집행잔액 과다 문제는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극히 비효율적인 사항으로, 예산편성 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전액 불용이 일부 계상되는 경우 타 사업에 이용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편성하는 등 사업 추진 시 충분한 검토와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국 · 도비 보조금 가내시 및 내시 공문 통보 후 추가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분은 추경예산에서 조정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변경사항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 외에도 결산검사 시 결산위원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대처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행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2014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결산액	세 출 결산액	세 계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잔 액	순세계 잉여금
				계	명시	사고	계속비		
계	842,048	709,176	132,872	73,624	55,019	16,454	2,151	5,428	53,820
일반회계	753,398	652,969	100,429	72,311	54,813	15,347	2,151	5,290	22,828
특별회계	88,650	56,207	32,443	1,313	206	1,107	—	138	30,992
공기업 특별회계	63,827	41,862	21,965	1,313	206	1,107	—	—	20,652
기타 특별회계	24,823	14,345	10,478	—	—	—	—	138	10,340

※ 자금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로 별도 표시

- 계속비집행 : 2,110백만원
- 기금현재액 : 27,638백만원
- 채권현재액 : 8,202백만원
- 채무현재액 : 99,410백만원
- 공유재산 현재액
 - － 토 지 : 27,177,886㎡ 969,034백만원
 - － 건 물 : 427,504㎡ 402,907백만원
 - － 기 타 : 580,775건 773,789백만원
- 물품현재액 : 813종 7,512백만원

○ 예비비 지출

－일반회계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 10,481백만원 중 2,163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508백만원을 지출하고, 1,567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공기업특별회계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 1,608백만원 중 지출결정액 없음

－기타특별회계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 9,459백만원 중 지출결정액 없음

●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재산상태	계	상 수 도	하 수 도
자산총액	573,837	233,679	340,158
부채총액	94,351	100	94,251
자본총액	479,586	233,679	245,907



의원발의 조례

제137회 임시회 (2015년 2월 11일 ~ 2월 13일)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의원



박일배 의원



김정희 의원



이종희 의원



박대조 의원



이상걸 의원

○ 제안이유

양산시 행정기구가 신설·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기구를 변경하여 상임위간 균형도모 및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구 변경(안 제3조 제2항 제2호)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행정국, 복지문화체육국,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웅상출장소,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양산시 복지재단 및 그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구 변경(안 제3조 제2항 제3호)
 - 경제주택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및 그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제6대 의원발의 조례〉

제13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 2014년 8월 21일 / 발의의원 김효진 의원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3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 2014년 8월 21일 / 발의의원 김효진 의원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6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2014년 10월 24일 / 발의의원 김효진 의원

양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6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2014년 12월 16일 / 발의의원 이기준 의원, 한옥문 의원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2014년 12월 16일 / 발의의원 이호근 의원, 김효진 의원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7회 임시회 (2015년 2월 11일 ~ 2월 13일)

심의 안건

1.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이상정 · 정경호 · 임정섭 · 차예경 · 이호근 · 이기준 · 이상걸 · 김정희 · 이종희 · 박일배 · 김효진 · 이정애 · 박대조 · 한옥문 의원 발의)

2.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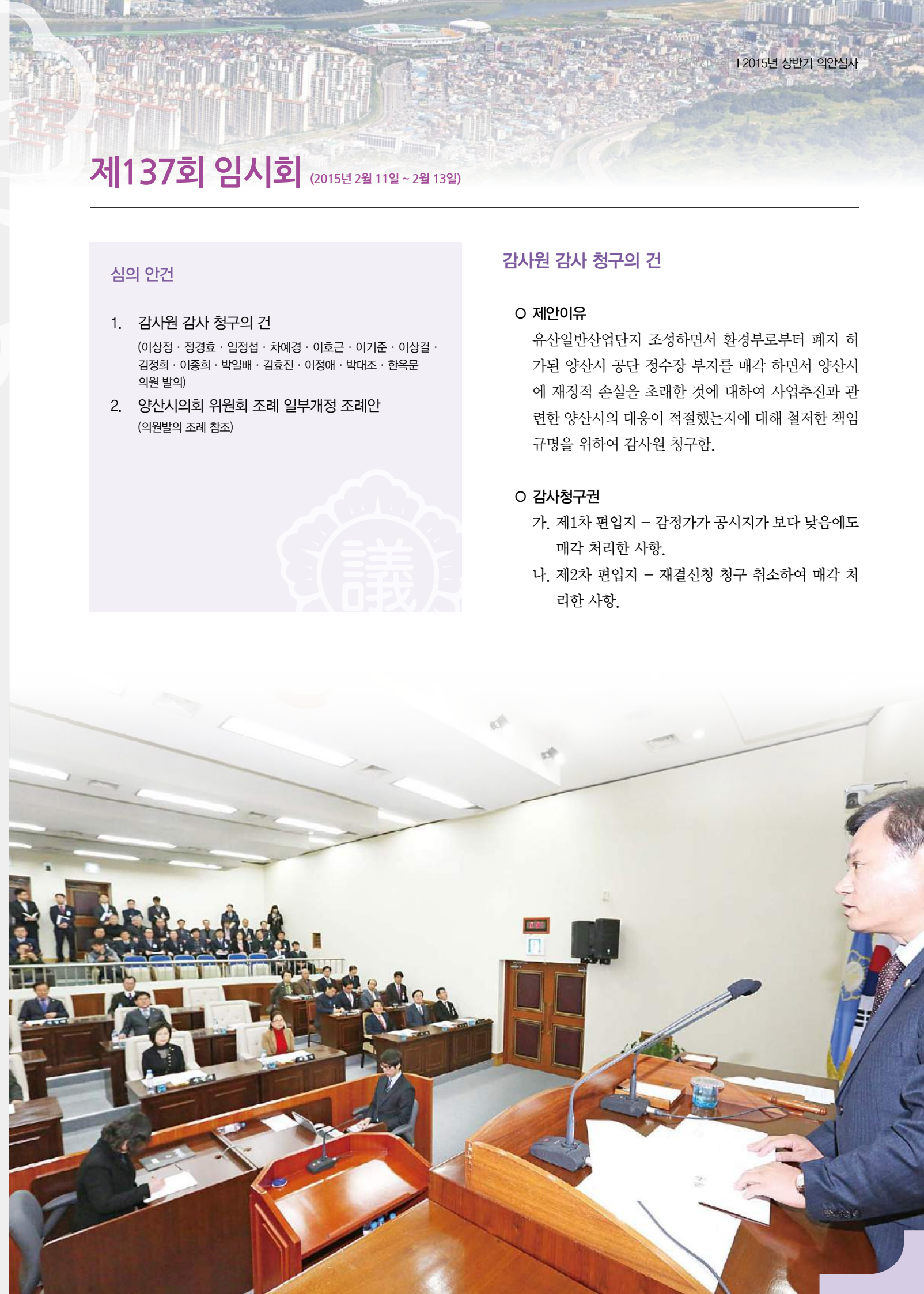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 제안이유

유산일반산업단지 조성하면서 환경부로부터 폐지 허가된 양산시 공단 정수장 부지를 매각 하면서 양산시에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사업추진과 관련한 양산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철저한 책임 규명을 위하여 감사원 청구함.

○ 감사청구권

- 가. 제1차 편입지 - 감정가가 공시지가 보다 낮음에도 매각 처리한 사항.
- 나. 제2차 편입지 - 재결신청 청구 취소하여 매각 처리한 사항.



제138회 임시회 (2015년 4월 27일 ~ 5월 1일)

심의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제출)
7. 양산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제출)
10. 양산시 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제출)
11.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2. 양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 양산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시장제출)
15. 양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6.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건설사업 위탁시행 동의안(시장제출)
17. 양산시 양산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 설립 조례안 (시장제출)
18. 양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9.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제출)
20. 양산시 양산지방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1.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제출)
22.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제출)(시장제출)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이 양산시 복지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삭제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체계적·안정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신규 위탁 사업을 명시하여 시설관리공단 사업의 운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양산시 복지재단 이관에 따른 관련 호 삭제 (안 제19조)
- 나. 신규위탁사업 신설 (안 제19조)
- 양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수정의결

변안 대비표

상임위의결안	변안동의안
제19조(사업) (생략) 1. ~ 9. (생략) 10. <삭 제> 11. ~ 14. (생략) 15. 양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16. (현행 제15호와 같음) 17. 제16호까지 18. (현행 제17호와 같음)	제19조(사업) (현행과 같음) 1. ~ 14. (상임위의결안과 같음) 15. <삭 제> 15. (생략) 16. 제15호까지 17.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5호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제>

양산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시행 '14.8.7)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현행 조례 행정서식 중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현행 조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31건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상위법 등 인용조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미개정 상태로 남아 있는 자치법규를 현행 법규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정부조직법」, 「지방재정법」, 「민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함.

■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자치법규 제명 및 인용조항 변경: 18건
- 나. 정부조직 개편('14.11.19)에 따른 중앙행정부처명 변경: 8건
- 다. 「지방재정법」 개정('14.11.29)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 명칭 변경: 10건
- 경리관, 분임경리관, 채무관리관 ⇒ 재무관, 분



제138회 임시회 (2015년 4월 27일 ~ 5월 1일)



- 임재무관, 부채관리관
- 라. 「민법」 개정(‘13.7.1)에 따른 결격사유 규정 변경: 3건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마. 양산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1건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행정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 및 보강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조직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정원의 조정(안 제2조, 제4조 별표 3)
- 정원의 총수: 1,036명 → 1,055명
 - 기관별 정원 조정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양산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 사무 및 부서간 조정이 필요한 사무를 정비하여 업무책임성을 높이고 민원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 안전행정과 ⇒ 행정과
- 경제정책과 ⇒ 경제기업과
- 원스톱민원봉사팀 ⇒ 원스톱팀
- 건설방재과 ⇒ 건설과
- 나.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
- 1) 출장소장 위임사무
- 지방세 징수: 세무과 ⇒ 징수과
- 공장 등록: 기업지원과 ⇒ 경제기업과
- 통신판매업 관리: 정보통신과 ⇒ 경제기업과
- 재난관리: 안전행정과 ⇒ 안전총괄과, 농업기반 시설 목적 외 사용
- 승인: 도시과 ⇒ 건설과
- 도시개발 관리: 도시개발과 ⇒ 산단조성과
- 농약 및 비료 관리: 농업기술과 ⇒ 농정과
- 축산 관리: 농정과 ⇒ 농업기술과
- 2) 읍면동장 위임사무
- 지방세 징수: 세무과 ⇒ 징수과
- 통계관리: 기획예산담당관 ⇒ 정보통계과
- 다. 위임사무명 변경(도로과)
- 가로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도로시설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보안등, 표지판 등 총괄적인 업무내용 반영
- 라. 위임사무 삭제(주민생활지원과)
- 주거복지 업무(저소득 전세 자금 융자)
- : 융자 업무가 은행으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양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고려사항을 명시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 추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협의회 구성 시 성별 균형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 (안 제3조제1항)
- 나. 당연직 위원 추가: 보존지청장(안 제3조제2항)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서중동 마을은 대단지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행정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입주민의 불편해소와 원활하고 신속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마을을 분리하고 적합한 마을명을 부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삼성동 이통 명칭·정수, 관할구역 조정
 - 명칭: 삼성동 신기동 서중동 ⇒ 서중동, 강이
 - 정수: 삼성동 20개 마을 ⇒ 21개 마을 (신기동 8개 ⇒ 9개)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138회 임시회 (2015년 4월 27일 ~ 5월 1일)

양산시 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나. 상위법에 따라 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체육기금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함

■ 주요내용

- 가. 기금 존속기한 연장 : 2015년 6월 30일 ⇒ 2020년 6월 30일(안 제4조)
-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추가 (안 제9조제1항)
-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안 제9조의2)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제안이유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정관변경 승인요청이 있어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정관변경 내용 : 기본재산 증자 (현금 1,800,000,000원)
- 나. 정관변경 사유 : 추가 기탁금 1,800,000,000원 기본재산 편입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찬성

양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가. 조례 근거법령인 「주택건설 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나.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법령 근거 없는 화재보험 가입 의무 규정(제17조)을 삭제하여 주민 금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안 제1조, 제2조, 제12조, 제15조) 「주택건설 촉진법」 ⇒ 「주택법」
- 나. 법령 근거 없는 규제조항 삭제(안 제17조)
- 국민주택 입주자의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 가입 의무규정 삭제
- 다. 그 밖에 명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양산지방공단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양산시 양산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를 추가 설치하고, 「지방재정법」 개정(‘14.11.29)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사항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 변경(법제처 개선 권고사항)
- 1) 현행 : 「양산시 양산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 2) 변경 :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및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 나.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및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규정(안 제2조, 제3조)
- 다. 세입 재원 및 세출 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4조, 제5조)
- 라.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마.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수정의결

개정안	수정안
제9조(자금의 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자금의 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양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 가. 행정자치부 조례 제정 권고(‘14.8)에 따라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을 향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규정(안 제1조)
- 나. 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예산지원 등 규정 (안 제3조, 제4조)
- 다. 놀이시설 내 행위 제한사항 규정(안 제5조)
- 라.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사항 등 규정 (안 제6조, 제7조)
- 마. 안전감시망 구축 및 담당부서 관리감독 등 규정 (안 제8조, 제9조)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가. 양산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하던 재난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사항을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 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나. 그 외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을 개선하고, 용어, 문장 및 띄어쓰기 등을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제138회 임시회 (2015년 4월 27일 ~ 5월 1일)

쉬운 조례로 개정하기 위한

■ 주요내용

- 가. 인용법령 제명 띄어쓰기(안 제1조, 제3조)
- 나. 통합관리기금 예탁 규정 개정,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안 제3조)
 - 1) 재난관리기금 장기예치기금액의 통합관리기금 예탁 규정 삭제
 - 2) 장기예치기금액 ⇒ 의무예치금액
 - 3) 당해연도 사용기금액 ⇒ 사용가능액
-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추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항 개정(안 제10조 ~ 제12조)
 - 1)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하던 기능을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 2) 심의사항 중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추가
 - 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수당 조항 신설
- 라.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안 제12조의2)
- 마. 재난관리기금 용도 추가(안 별표)
-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건설사업 위탁시행 동의안

■ 제안이유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코자 함

■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 1) 위치 : 부산 노포역 ~ 양산시 북정동
- 2) 사업량 : L=12,51km, 정거장 7개소, 차량기지 1개소
- 3) 사업기간 : 2011년 ~ 2020년(개통 2021년)
- 4) 사업비 : 5,558억원 (국비 60%, 지방비 40%)

나. 위탁내용

- 1) 위탁사무
 -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사업의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계획, 설계, 계약, 시공, 감리, 토지수용, 시운전 등 전반적인 사무
- 2)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도시철도 양산선 개통시 까지
- 3) 수탁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44번길 20 (범천동), 부산교통공사
 - 「부산시 교통공사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방공기업
 - 부산시 도시철도의 건설, 운영 및 관리주체

다. 위탁의 필요성

- 1) 우리시는 도시철도 건설 경험이 전무하여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전문지식과 전문 인력 부족함.
- 2) 우리시 재정능력과 직제조직을 고려할 때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직제 조직 신설이 사실상 곤란함.
- 3) 조직을 신설하여 추진할 경우 건설사업 완료 후 잉여 인력배치 문제
- 4) 도시철도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이 효율적임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양산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 설립 조례안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양산시 출자기관인 양산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출자기관의 설립목적 및 자본금(안 제1조~안 제6조)
- 나. 정관 및 사업수행 (안 제7조 ~ 안 제8조)
- 다. 보고 및 검사 등 (안 제10조)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조례 제8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조항 중 제2항제7호 내용 수정 및 의료장비에 의한 검진수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조항 내용 수정(안 제8조제2항제7호)
- 나. 의료장비에 의한 검진수수료 조정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가 제16조의4로 개정('14.11.20.)되어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안 제11조, 제13조,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양산지방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폐수종말처리시설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 및 시설 명칭 변경
 - 1) 「양산시 양산지방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 2) 「폐수종말처리장」 ⇒ 「폐수종말처리시설」
-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안 제26조)
 - 「지방세법」 ⇒ 「지방세기본법」
-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제138회 임시회 (2015년 4월 27일 ~ 5월 1일)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제안이유

- 가. 배내골 앞새버섯 재배시설 조성사업 : 환경관리과
- 해당 사업 대상지는 밀양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낙동강수계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원동면 대리 앞새버섯 재배시설 조성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의 소득증대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나. 황산공원 철도횡단 보도육교 설치 : 건설과

- 황산공원은 공원과 주거지 사이에 도로와 철도가 횡단하고 있어 긴 보행 동선으로 인한 이용객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물금신도시와 황산공원을 잇는 철도횡단 보도육교를 설치하여 접근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공원이용 활성화 및 원도심 경기부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주요내용

구분	사유	재산규모	추정가액 (천원)	비고
취득		토 지 : 1필지(1,690㎡) 시설물 : 1식(L=130m, B=3m)	3,642,081	
취득	배내골 앞새버섯 재배시설 조성	토 지 : 1필지(1,690㎡)	42,081	환경관리과
취득	황산공원 철도횡단 보도육교 설치	시설물: 보도육교 1식 L=130m, B=3m	3,600,000	건설과

■ 소관위원회 :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감사위원을 선임코자 함.

■ 주요내용

- 감사위원 : 3인(의원 1, 공인회계사 1, 전직공무원 1)
- 선임대상자

소속	직위	성명	비고
양산시의회	의원	정경호	
회계법인지명	공인회계사	이강희	의장추천
전직공무원	민간인	정재술	시장추천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제139회 정례회 (2015년 6월 10일 ~ 6월 26일)

심의 안건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양산시 읍부조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장제출)
-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 양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양산시 읍부조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 가. 제7대 시장공약인 위민행정 및 시민권의 신장 실현
나. 다양한 시민의 행정요구에 대하여 민간인 기구를 통해 다양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조정중재를 통해 갈등을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읍부조만의 구성과 직무(안 제3조~제7조)
나. 읍부조만 회의(안 제8조)
다. 읍부조만의 자격 및 의무 외(안 제9조~제14조)

라. 고충민원의 처리(안 제15조~제25조)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수정의결

조례안	수정안
제4조(임기) ① 읍부조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읍부조만이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운 읍부조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읍부조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읍부조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읍부조만이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운 읍부조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읍부조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직무) 읍부조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5(생략)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읍부조만에 의뢰한 시안에 대한 조사·처리	제6조(직무) 읍부조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5(현행) 〈삭제〉
제14조(공표) 읍부조만은 고충민원 조사와 공공사업의 청렴계약 감사평가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조사결과와 의견표명에 대해 공표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읍부조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읍부조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26조(감사·평가 대상) 읍부조만이 감시·평가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생략) 5. 시장의 요청에 따른 감사 과정참여	제26조(감사·평가 대상) 읍부조만이 감시·평가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현행) 〈삭제〉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지방 규제개혁추진단 기구개편 지침」에 따라 한시기구(존속기한: 2015.8.31)인 규제개혁추진단을 부시장 직속기관에서 공보담당담당관 내 담당으로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제개혁추진단 폐지 (안 제4조)
- 공보감사담당관 내 규제개혁담당 신설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제139회 정례회 (2015년 6월 10일 ~ 6월 26일)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주)늘푸른하우스로부터 교리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사업 구간에 대하여 경계변경 신청이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계설정이 필요함에 따라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양산시 유산동 4,394㎡(8필지) ⇒ 교동으로 편입
나. 양산시 교동 1,090㎡(2필지) ⇒ 유산동으로 편입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가. 현행 「양산시세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이 2014. 12. 31.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연장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축소 등 감면 적용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함

■ 주요내용

가. 재산세 감면율의 일부 축소
1)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축소(안 제3조, 75%)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의 물류터미널 공사계획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축소(안 제4조, 25%)
3)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축소(안 제5조, 50%)
나. 현행 법령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감면신청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 제126조 제1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정비(안 제15조)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나. 「국세징수법」에서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1개월간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10일간 공고하는 시세 기본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우편에 대한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 안 제8조, 안 제9조)
- 보통우편 → 일반우편
나.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정비(안 제16조)
- 공탁 등 → 교부금전의 예탁
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9조)
- 체납처분 중지한 경우 10일간 공고 → 1개월간 공고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제139회 정례회 (2015년 6월 10일 ~ 6월 26일)

양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양산시 조직개편에 따른 징수와 신설 및 차량등록사업소의 체납업무가 징수과로 이관됨으로 인하여 양산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위원 중 차량등록사업소를 징수포상금 관리 부서인 징수과장으로 변경하여 개정코자 함

■ 주요내용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위원 변경(안 제5조제3항 (차량등록사업소장 → 징수과장))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 제안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양산시 정책에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과 시기를 명시함 (안 제5조, 제7조)
- 나. 분석평가서의 작성 및 평가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제9조)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심의사항 등 규정(안 제11조)
- 라.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2조)
- 마. 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교육 실시(안 제13조)

바.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원 근거규정(안 제14조)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유물수집 대상 및 범위를 신설하고, 유물평가심의회 운영에 따른 심의위원들의 구성 인원, 임기, 자격을 정비하여 유물평가심의회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용코자 함
- 안 제21조의3을 신설하여 유물구입 방법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함
- 오·탈자 수정, 자구수정 및 시립박물관 운영에 따른 전시관 명칭 변경

■ 주요내용

- 가. 명칭변경(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29조, 안 제37조, 안 제40조)
전시관 → 박물관, 상설전시관 → 상설전시실
- 나. 유물수집 대상 및 범위 지정(안 제20조)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유물과 학문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
- 다. 심의회 구성인원 수정(안 제21조)
5명 이내 → 3명 이상
- 라. 심의위원 자격 정비(안 제21조)
문화재 및 유물 관련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 마. 심의위원 임기 수정(안 제21조)
2년 → 매회 해당분야 심의 종료시까지
- 바. 유물평가위원 수당 신설(안 제21조의2)
- 사. 유물구입 신설(안 제21조의3)
- 아.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8조)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양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상위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조항 개정 및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함

■ 주요내용

- 가. 기금 존속기한 연장 (안 제13조)
2015년 10월 30일 ⇒ 2020년 10월 30일
- 나. 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추가,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항 개정(안 제14조 ~ 제15조의2)
 - 1)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 조항 마련
 - 2) 심의사항 중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추가
 - 3)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 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조항 개정(안 제18조)
- 라. 기금관리에 관한 관계규정 개정(안 제20조)
-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수정의결

개정안	수정안
제11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전통시장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양산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근로자 기본권 및 권익 등에 대한 법률상답이 쇄도하나, 그에 상응할 수 있는 상담기관이 부족한 실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전문상담기관의 필요성 대두
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미약하여 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 처우 등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보호 필요

■ 주요내용

- 가. 양산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3조)
- 나.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수행사업 규정 (안 제4조)
- 다. 위탁대상 기관 및 위탁기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라. 수탁자의 선정 절차 및 위탁 연장사항 규정 (안 제6조, 제7조)
- 마.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 및 해지 절차 규정(안 제8조)
- 바. 수탁자의 의무 규정(안 제9조)
- 사. 시장의 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 소관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5분 자유발언



제138회 임시회 김정희 의원

“교통문제 해결 위한 능력 길러야”

교통문제는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자 심각한 사회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통문제에 관한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충분히 예상가능한 문제가 있다면 미래 양산을 위해 문제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예산확보의 문제입니다.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총 사업비가 5천558억원으로 그 중 2,223억원이 지방비로 부담됩니다. 지방비는 경상남도가 17.5%, 부산시가 13.7%, LH가 16.3%, 양산시가

52.5%를 부담하기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시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당장 2016년에 62억9천만원, 2017년도에는 164억5천9백만원, 2018년도 282억원, 2019년도에는 384억2천5백만원, 2020년에는 247억6천3백만원, 총1천166억4천7백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도 LH가 16.3%를 부담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지만 만약 LH가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부담률 조정을 통하면 227억9천1백만원이 고스란히 양산시의 추가부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검토등의 부족으로 자칫 양산시의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며, 부담금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설정하고 분담계획에 따른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예측의 문제입니다.

예산확보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정확한 수요예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예측에 따라 손실보전 정도가 달라지고 그 금액 또한 엄청납니다. 타시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용인시는 사업비 6천970억원을 들여 18.1km의 경전철을 건설하여 운행하였습니다. 당시 1일 평균이용객 14만 6천명으로 예측하였지만 2014년 7월 기준 이용객 1만3천명으로 9%수준에 머물렀으며, 2014년 9월 환승 할인이 된 후 첫 주말이용객은 3만3천명, 평일 2만명 정도로 당초 수요예측 이용객의 15~2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서울시내 이용객이 가장많은 145번노선 1개 정도의 효과이며 이로 인해 매년 수백억원의 손실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는 1일평균 이용객 9만명으로 추정하고 사업비 5천841억원을 들여 10.6km의 경전철을 건설하였으나 개통 후 실제 이용객은 1만5천명이었으며, 2014년 환승할인 후 이용객이 2만8천명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약2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소 손익분기점인 1일 이용객 5만명을 넘길 수 있을지 관심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김해 경전철도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고, 고양시, 광명시, 안양시 등도 경제성과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갈등 또는 사업보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양산시는 사업비 5천558억원을 들여 총길이 12.5km를 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전에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비용대비 편익분석비(B/C)가 1.10이라는 타당성 분석결과를 내놓았습니다만 이것은 1일 수요 예측인원 46,046명이 달성되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측인원 만큼 달성되지 않는다면 타시군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양산시도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계획되어있는 경전철 노선도만 보더라도 과연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까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전철을 타고 양산시내에서 동래까지 가는 시간이 환승을 포함하여 약50분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운행하고 있는 1200번 버스를 타면 직행으로 30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를 환승까지 해야하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실시한 용역이 이 같은 사항을 감안하고 1일 수요 예측인원을 제대로 예측했는지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사전에 정확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타시군의 경전철 운행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대중교통 체계를 명확히 재확립을 하여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용객 증가를 도모해야 합니다. 또 개통시기에 발 맞추어 교통수단간의 연계 환승체계를 확립함은 물론 양산이 명품 교통요충지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사송보금자리주택 사업 추진과 원도심 활성화, 기업유치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요청합니다.

첫째, 현재 양산시가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여건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교통수요 예측에 대한 검증을 다시 한 번 하도록 강력히 요청합니다.

둘째, 교통수요 재검증을 통해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 추진시기 조절 및 시 재정투입 최소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셋째, 도시철도 사업 후 만성적인 적자운영을 없애기 위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후대에게 좋은 기반시설을 물려주기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대형사업은 기초 단계부터 정밀한 분석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비용편익분석, 향후대책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첫째에서 셋째까지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양산시보나 양산 일간지에 게재하여 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도시철도 사업은 막대한 적자로 공무원의 임금이 삭감되고 복지비용이 감소되는 등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제138회 임시회 박대조 의원

“복지재단 산하 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마련하라”

우리 양산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개선과 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양산시복지재단이 출범하였으

나, 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각 복지관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서비스를 받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도 행복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양산시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할 때보다 인건비가 줄어들고,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근무하다 재단에 입사한 종사자도 임금이 줄어들었습니다. 복지재단 산하 복지관 직원에 대한 지원강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라는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는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경우 20세기 초반 극도의 빈곤과 국가위기 속에 노동자 계층이 정계에 뛰어들면서, 사회민주주의라는 당시로서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국가 설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잘 살게 되어 복지국가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가 한계에 부딪힌 위기 상황에서 복지국가가 탄생하였습니다. 즉, 복지예산을 오히려 확대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한 사례인 것입니다.

또한 브라질을 일으킨 룰라 전 대통령은 “왜 부자들을 돕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그가 집권한 시기 4,000만 명에 이르는 브라질 빈민층이 중산층으로 올라서서 경제성장의 주역이 된 점은 시사하는바가 크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나동연 시장님!

본 의원은 양산시민에 대한 복지확대를 위해 어르신들의 여가시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웅상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여 복지전문 인력과 리모델링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웅상지역의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한 점,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웅상지역 장애아동들에 대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도 지역사회복지역량을 강화하여 양산시민 모두에게 적합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퍼스트 웅상”을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청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138회 임시회 이기준 의원

“무상급식 문제 해결 서둘러야”

무상급식은 이제 이해득실의 차원을 떠나 자라나는 학생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교육의 일환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논란 건으로 인해 도내 학부모와 지자체, 의회, 교육청 모두가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무상급식 논쟁은 당초 도교육청과 경상남도의 감사논쟁에서 시작되었지만 고통은 고스란히 도내 학생들과 부모의 몫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해관계를 거쳐 사회적 합의로 시행된 무상급식 정책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한 끼 식사 해결의 문제를 넘어 시민경제 지원, 아이들의 정서함양, 나아가 미래 국가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 동안 도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정책으로 인

해 도내 관련 기관 간의 팽팽한 신경전과 소모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는 합의되지도 않은 도의 일방적인 지시에 100% 편승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조례 제정 전에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것은 향후 조례 부결시 시행령의 엄청난 신뢰성 추락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렇듯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 부결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시도 조례가 부결될 시 시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아이들 식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더 이상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진정한 복지행정을 펼쳐주시길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이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급식비를 국가에서 직접 지원토록 개정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어느 학교나 똑같이 무상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무상급식을 지자체의 문제로만 인식하지 말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심신 건강을 위해 학교급식법이 하루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138회 임시회 임정섭 의원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추경예산 철회, 조례 제정을 거부할 것을 촉구”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슬로건아래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강력하고 애절하며 차별 없는, 공부가 아닌 밥을 달라는 요청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때, 양산시는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경상남도 조례도 도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 시민들의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경상남도의 무리한 행정에 동참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경상남도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제도의 시행을 예고하고 있어 이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한 조례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26조 2항에는 “중앙행정기관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례, 사회보장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항에는 “제 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경상남도에 보낸 경고성 공문에는 지난 1월 19일 협의를 요청한 경상남도가 시행키로 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추진과정이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소지가 있는 만큼 절차를 준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은 중복 또는 과잉복지 도입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국무총리 주재 사회보장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결론이 나기 전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협의와 수용 동의 없이 시행된 사업은 없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사회보장제도인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2015년 3월 19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기에, 이는 절차상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밝힙니다.

둘째, 현재 양산시에 4월 24일부 대상자 9,593명의 81%인 7,754명이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신청자는 양산시 조례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줄속으로 추진되고 있고 소득 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250%까지 대상자를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확인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전산망을 통해 불법 부당한 신청자를 가려내야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사용 승인을 하지 않고 있어 대상자 선정시 재산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없고 부당 수급자를 가려낼 방법이 없어 세금이 낭비되고 이중 지급될 소지가 많습니다.

셋째, 사업의 중복성입니다

양산시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경남교육청의 교육복지 정책사업과의 유사·중복 지원에 따른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가정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적 사업 그리고 교육적 가치와 전문성이 결여된 사업입니다

이렇듯 조례의 문제가 있음에도 우리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고 예산도 책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3월 16일부터 읍·면·동을 통해

서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근거와 예산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지자체에서 초법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후 법적 효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용이 변경되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양산시는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기위해 시민들에게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소득분위별 지원금을 차등지급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초기 신청 절차의 불편함과 아이들이 차별받는 것의 부담감으로 신청을 꺼려하자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각 읍면동에 직원들을 주말근무까지 시키며 신청을 독려하여 대상자의 81%까지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타지자체에서 심사보류 및 부결로 이어지고 우리시도 부결될 것으로 유추하여 양산시장은 14일 양산시의회로 철회공문을 보냈습니다. 17일 경상남도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 시장·군수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을 하여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시행을 불투명하게 하였습니다. 무리하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교육비 지원 신청을 이미 많이 받아놓고 양산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및 1회 추가경정예산안 철회 요청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민들의 생계의 시급성, 그리고 우리시의 조직 개편으로 인한 예산 집행의 시급성 및 복지 재단 출범에 따른 직원들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조직운영비 등의 필요에 의해 꼭 심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산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한 건의 문제성 때문에 1회 추경예산 전체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시장의 가치관이 심히 의심스러우며, 또한 이번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해 예산을 철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정말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경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있어 나동연 시장께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찬성하였으며 타지역보다도 적극적으로 신청서를 받아 빨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라 있는 홍준표 도지사에게 향후 거취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산시의 시정은 일관되고 신뢰성 있게 운용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시정이 반복되고 시장

님이 시민들과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은 독선적인 발상입니다.

시장께 당부드립니다.

양산시는 도지사의 눈치보기가 아닌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진 무상 급식을 재개하고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양산시는 입법 예고 등 관련 조례제정 절차를 이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조례제정 거부와 무상급식을 재개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정관련
양산시 독선적 행정 그만둬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정관련으로 안전행정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중, 2013년 11월부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정관련에서 사전준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용역결과와 한수원의 권고사항만 가지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21.5km를 지정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시의회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시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특히 양산시 전역이 30km안에 대부분 들어가니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하여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 후에 지정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이후 반복된 의회의 위상을 훼손하거나 의회기능을 경시하는 사례,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사례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언론에 내고 무성의한 대답을 일관하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시의회에 대해 하지 않은 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여 해당 의원이 집행부에 사과토록 요구하는 등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둘째, 속기록 조작설을 제기하며 민주방식의 지방자치 운영을 부정하고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일명 방사선 임시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셋째, 임시회 과정 중 행정국장은 시정 질문 시 본회의장 단상을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고

넷째, 본회의장에 출석 요구된 공무원을 호명하였으나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의회 내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청취하는 등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다섯째, 임시회시 시정 질문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민의 의견을 참조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여 양산시는 안내판 하나 없는 공청회가 아닌 일방적 줄속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은 동원된 공무원과 읍면동 주요인사만 참석시켜 시민의 질문을 막고 국·과장급 공무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참석 주민들이 절반이상이 행사 중 퇴실하였고 주민들의 발언을 가로막는 행위 등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주민에 대한 무한 봉사자로서 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여섯째, 의원 부재시 의원사무실을 무단출입하여 의원 허락없이 자료열람 및 유출 등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방해한 행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한 법령과 조례

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의회의 의결사항이며, 또한 제 137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하여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결없이 일방적 MOU체결,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등 재발하는 사례를 하지 않겠다고 양산시장은 약속을 하였다.

하지만 웅상 중앙병원 소아 야간 공휴일 기관 공모사업이나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등 시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공모사업 진행과 예산과 사업의 추진 근거도 없이 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시의회는 의회 위상 훼손 경시 사례를 통보하고 관련 공무원 문책 등 조치 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조치 요구사항인 행정국장의 전보조치에 대한 답변 없이 회신되었습니다. 재차 요구사항 조치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행정국장 전보 인사조치 이행 촉구에 대하여 조직의 제반 인사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 판단할 사항으로 차후 정기인사 시 시의회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무성의한 답변이 왔습니다.

이에 시의회는 4월 14일 의원협의회를 개최하여 임시회 개최 일정 논의하여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임시회를 개최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산시는 의원협의회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안이 부결될 것을 유추하여 사전 협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의안 철회요청을 통보하여 시의회가 임시회에서 1차 추경예산안 심의가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도가 나가게 하여 의원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였습니다.

시장께 여쭙습니다.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질 때 까지 시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나 계신지요? 조직의 수장으로서 최측근 참모들의 실수를 알고도 모른척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의회를 경시하는 계산된 고의적 의도인지요?

묵묵부답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시민들의 소리에 눈과 귀를 막고 계시다고 합니다. 새벽에 시행하는 현장행정에 참석 대상이 아닌 과장이 참석치 않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되어 경상남도에서 취소결정이 내려지자 다시 중징계를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을 근무하였고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눈에 벗어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살벌한 곳이 양산시입

니까?

조직관리와 리더십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무상급식의 반대와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서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경상남도지사의 일방적인 행정에 발맞추어 공휴일에도 읍면동 직원을 동원해서 전체 대상자 중 81%에 해당하는 주민한테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시점에서 결정을 보류하고 망설이고 계십니다.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 철회요청을 하고 일관성 없는 시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울산광역시시는 30km로 지정하여 울산과 인접한 하북면은 제외되어 시민의 안전에 무관심하고 경상남도에 안전방재대책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을 요구해야 함에도 아무런 대응 없이 중앙정부에 결정만 바라고 있는 처지입니다.

양산시장이 시민을 안위를 걱정하는게 아니라 양산시민이 양산시를 도리어 걱정을 하는 형국입니다.

양산시의회는 시장님의 하급기관이나 발목을 잡는 곳이 아니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 개발에 노력하는 기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일련의 사태는 우리 의원들의 책임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의원의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의 견제가 아닌 공과사를 구분할 수 없는 행태로 동료의원들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시위원의 신분은 자신의 권익보다는 시민의 권익을 먼저 생각하고 일관되고 소통하는 시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당부입니다.

양산시가 회신한 공문처럼 이해와 소통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해와 소통을 희망하고 제대로 된 전달체계를 통해 진언이 통하여 양 기관이 시정을 공유하고 협력과 상생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호 존중의 풍토 속에서 건전한 지방자치체를 함께 구현해가기를 희망함을 담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제139회 정례회 이상걸 의원

“고리1호기 영구정지 환영, 안전에 대해 인식 재교정하라”

고리1호기 영구정지결정은 지난해 12월 양산시의회가 원전 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사고대처에 총체적인 허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직시하고 고리1호기로부터 양산 시민은 물론 전 국민 안전을 위해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을 폐로해야 한다고 결의, 촉구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영구정지가 결정되는 그날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고리1호기 폐쇄 촉구운동을 벌여왔던 양산시민과 부산, 울산을 비롯한 고리1호기 주변도시의 시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의 결과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본의원은 양산시의회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본회의장에서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뜨거운 가슴으로 환영하며 고리1호기 영구정지가 결정된 이 시점에서 고리원전 30km 반경 안에 살아가는 양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리원전과 양산시민의 행복과 안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안전 불감증”이란 말을 자주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이란 사고가 안난다는 가정하에 안전에 대해 형식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설마 사고가 나겠어?”, “설마, 설

마, 설마” 사고가 난 이후에는 “설마가 사람잡는다”고들 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는 “설마 그 큰배가 뒤집어지겠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의해 꿈많은 아이들이 희생을 당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메르스 확산이 “설마 확산 되겠어” “아무것도 아니야 금방 해결 가능해”라는 안일한 생각이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고 정확한 정보가 감추어진채 괴담과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나라의 경제마저 침체시키고 있습니다.

안전의 문제, 특히 국민의 안전의 문제를 생각할 때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해결의 실마리가 열리고 안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보가 국민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공개된 정보 속에 국민적 합의로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갈 때 모두가 공감하는 국민안전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전에 관련된 정보는 대부분 대외비로 부쳐지고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만 난무하는 것이 오늘의 원전관련 정보의 현실입니다.

원전의 위험성을 이야기 할 때 ‘피해의 크기’와 ‘사고발생확률’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전옹호론자들은 ‘피해의 크기’는 이야기 하지 않고 확률만 말하면서 안전하다고 합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참사가 보여주었듯이 원전피해의 크기는 짐작할 수 없는 가공스러운 것이기에 일본 원전 설계자인 고토박사는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특히 한국 같이 국토가 작은 나라는 사고 한번으로 망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쿠시마 참사이후 일본원전안전위원회는 일본에서 체르노빌과 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안전문제를 준비했기에 후쿠시마 참사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대형 핵사고는 원전이 많은 곳에서 노후원전이 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괴물이 될지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리1호기는 영구정지되지만 고리1호기 영구정지 이후에도 5기의 원전은 여전히 가동되고 신고리3, 4호기가 새롭게 건설되고 있습니다. 고리2, 3호기는 수명을 30년 넘기고 있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남은 원전이 더욱 많아지고 고리주변도시 특히 우리 양산시민의 안전에 암덩어리 같은 존재로 위협되어질 것입니다.

원전의 불확실한 위협으로부터 양산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핵발전 제로를 선언하고 계획 있게 재생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원전 같은 정책은 국가 사무이기에 양산시와 시의회에서 다루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원전의 문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이지 지방자치단체가 다룰 수 있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고리원전으로부터 반경 30km 내에 있는 양산시에서는 적어도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양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핵발전 제로시대를 열어달라고 하는 것도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책임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세계적 흐름은 핵발전을 축소시켜가면서 재생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미국내 4개의 원전에서 5기의 원자로를 폐로 또는 가동중단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버몬트 양키 원전은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가 2032년까지 가동을 허용한 상태이지만 발전을 중단시켰습니다. 중단이유에 대해 채산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독일 환경청장인 하리레만은 “유럽에서는 누구도 핵발전이 다른 에너지보다 싸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발전업자에게 일정수익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원전건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추세적으로 유럽은 핵발전의 비중이 줄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완전 폐쇄하겠다고 ‘에너지 전환을 선언한 독일은 시민들의 힘에 의한 재생에너지 정책

으로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주체는 200만명의 시민들이라고 합니다. 2012년 기준으로 38만 개의 일자리가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레만국장은 “전력 회사 중 재생가능에너지 쪽에 투자하지 않은 회사들은 손실이 크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핵발전의 비중이 40%에 육박하고 있고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은 3.66%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외국에선 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는 산업폐기물을 태워 만든 전기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국제기준을 적용하면 1.3%로 떨어집니다.

경제성이 떨어지고 파괴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핵발전 에너지 정책에서 환경친화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고리원전의 핵위험으로부터 양산시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나서서 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나서지 않으면 시민들이 앞장서서 재생 에너지의 깃발을 올려야 합니다. 고리원전으로부터 30km 반경에 살고 있는 양산시민이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4.2% 2013년 서울의 에너지 자립률입니다.

원전을 짓지 않으려면 서울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거나 에너지를 직접 생산해야 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주민운동으로 절전소운동과 햇빛발전소운동으로 에너지 자립률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동작구 전체는 전기사용량이 늘고 있지만 성대골 주민들은 매년 10% 가까이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있고 햇빛 발전소를 학교와 공공기관의 옥상에 설치하여 마을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9개의 햇빛발전협동조합이 있고 현재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성대골처럼 새로운 에너지시스템으로 먹고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건설회사, 하청회사, 학회 등 원전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2만명 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원전을 지지하는 여론을 주도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먹고사는 사람이 늘어

나야 원전중심의 에너지정책이 바뀔다고 했습니다.

원전으로부터 양산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에서도 원전을 없애기위한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하는데 양산도 그냥 있을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고리원전으로부터 30km반경에 있는 도시, 양산시는 에너지 자립률을 100%목표로 시민운동을 독려하고 햇빛발전생산에 관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양산시 에너지 자립률 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줄 것을 양산시에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 결정에 대해 진심을 담아 환영하지만 앞으로 남은 2년이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고리1호기는 설계수명연장한지 8년의 세월이 흘렀고 8년동안 잦은 고장과 사고은폐등으로 원전주변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남은 2년 안전하게 가동되어 그 막을 내릴지가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노후원전을 안전하게 가동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위한 정비와 점검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에 따른 비용문제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고리1호기 수명연장으로 인한 가동비용이 3400억원 손실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동할수록 손실이 나는 위험스런 2년의 가동보다 지금 당장 즉각 폐로하여 고리원전 주변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는 없는지 한수원 책임있는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39회 정례회 김효진 의원

“무상급식 근원적인 해결 위해 노력해야”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문제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중단된 무상급식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학교급식의 주체가 누구인지?

왜, 무상급식이 중단되었는지?

그리고 양산시의회에 발의된 양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무상급식조례가 아님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나아가 학교급식의 해결 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의 주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3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라고 명시되어 있고, 3조 2항을 보면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어 학교급식의 주체는 법률로도 교육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무상급식이 왜 중단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경상남도의 무상급식은 학교급식의 주체인 경상남도교육청과 경

상남도의 업무협조 마찰로 중단된 것입니다.

전년도 기준 무상급식은 경상남도교육청 37.5%, 경상남도 25%, 지자체(양산시) 37.5% 비율의 매칭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경상남도가 학교급식에 지원한 예산에 대해 경상남도교육청에 감사를 요구하였으나 기관 대 기관으로 감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하여 경상남도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양산시는 양산교육지원청에 무상급식비 매칭비율 37.5% (42억 6천 3백만원)를 전액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관이라 감사를 받지 않는다고 할 때 과연 계속지원을 해야 할지? 또한, 양산시가 많은 사회단체(민간자본보조, 행사보조, 운영비등)에 예산을 지원하고도 해당 단체가 감사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계속 지원을 해야 할까요?

참고로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지원된 예산에 대해 반드시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어 법률로도 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산시의회에서 발의중인 양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무상급식 조례가 아님을 양산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무상급식은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식품비등 무상급식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합니다.

현재 발의중인 양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존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학교급식법 제8조 4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 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 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상위법을 근거로 발의 하였고, 발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서도 명확하게 “식품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고, 제2조 2항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어 앞서 여러차례 언론에 보도된 양산시 무상급식 조례 재추진이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양산시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지난해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 농수산물 지원 예산은 7억 9천 1백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이렇듯 무상급식은 지자체만의(양산시) 업무가 아니라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와의 매칭사업으로서 양산시 자체예산만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어려운 점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중단된 무상급식 재개를 위해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첫째, 학교급식의 주체는 법률로 도교육감이라 되어있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하루빨리 학교급식의 주체인 도교육감은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방법이던 무상급식의 대안을 강구하여 학부모님들의 고통을 치유해야 합니다.

둘째, 무상급식의 문제는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초·중등은 의무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있든 똑같이 교육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무상급식을 살펴보면 지자체별 분담률이 다르며, 매년 교육청과 광역지자체간 분담률 조정으로 마찰을 빚기 일쑤며, 지자체별로 무상급식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 불평등이 발생하고, 지자체 내에서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읍면동별로 구분해 차별의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급식비 지원방법도 지자체마다 제각각 다르게 시행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건전한 정서발달을 위해서 교육이라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지역에 살든지 간에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위와 같은 문제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 어긋나고 있으며, 헌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지역이든 어떤 방법이든 같은 조건의 무상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급

식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양산시장에게 건의합니다.

전년도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한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 금액(참고, 7억 9천 1백만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대하여 읍, 면, 동에 상관없이 의무교육대상인 양산시 초, 중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조금이나마 학부모님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길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불법 광고물 근절해야”

저는 오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위험, 청소년 유해물 노출 등의 문제를 유발하는 불법광고물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주변 및 주거 밀집지역까지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 불법전단지 배포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이것이 청소

년의 비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지난해 양산시는 현수막, 벽보, 전단 등 28만건의 불법 광고물을 철거했으며, 34건에 7천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철거된 건수에 비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적은 것은 부과대상자를 잡기 어려운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부분의 음란전단지 배포자들은 점조직화되어 단속을 피하고 있으며, 성매매업소는 배포된 불법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지자체와 경찰의 합동단속에도 단순 배포자 처벌은 매우 미약해 실질적인 근절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불법광고물의 제작 업주는 생계문제, 영업활동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정당성을 부여하겠지만, 일반시민들은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안전한 거리를 거닐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점점 지능화되어가는 광고물 부착방법으로 철거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과태료 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는 처벌 수위가 낮아 근절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가 작년 9월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불법광고물의 발생원인을 과태료부과 등 처벌이 약해서가 61.7%, 단속의지 부족을 45.7%로 기록했습니다. 불법광고물은 비단 우리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므로 법률개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입니다.

광고물의 형태에 따라 장당 보상 단가를 정하여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보상해주는 방법으로 인력부족으로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경감해주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거를 함으로써 항상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뿐만아니라 일자리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면 일자리 창출의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셋째,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현장 신고 시스템 도입입니다.

시민들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적발사항을 실시간 전송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증거확보, 신속성이 보장되므로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불법광고물 기재 전화번호 즉각 정지 방법입니다. 성매매를 암시하거나 불법사행성 PC방 등의 불법전단지는 단속시간을 피하여 심야시간대 빌딩 사이의 난간, 공중전화부스, 주차차량, 남자화장실 등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주택가, 학교 인근 등에도 수백 장씩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즉각 정지시키고, 이력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 호기심이나 순간 실수로 기재된 전화번호를 눌러 되돌릴 수 없는 길로 갈 수 있으므로, 불법 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즉각 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법적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단속을 펼쳐야 합니다.

경찰, 시민단체 등을 활용하여 24시간 상시 단속반과 명예감시반 등을 구성해서 현장 적발율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불법을 해도 관찮겠지 하는 의지를 완전히 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시민의식 개선입

니다.

그 무엇보다 시민 스스로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의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름답고 안전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정비활동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을 자발적으로 철거하는 자정능력이 생기고 선진 시민의식이 점점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실행의 문제는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품도시 양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범람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양산시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이 기금의 설치 목적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의회나, 집행부, 시민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공유하고 인식하여 살기 좋고 안전한 양산시가 되도록 하나씩 해결해나가길 기대하면서 이만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시정 질문

“방사능 재해 관련 대책 마련해야”

제137회 임시회 차예경 의원



우리는 고리원전과 인접해 있어 시민들이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안고 살아야 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핵시설이 안전하다는 여론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사고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핵사고는 그 사회를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 일본 방사능방재대책의 근본적인 실수는 기계적인 문제, 자연재난 등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것은 다 제쳐두고, 실제 대형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양산시는 안전하다는 정부의 말만 믿고 일본이 한 실수를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방사능 재난은 인간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고, 사고 초기에 사고정도 및 범위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나동연 시장님!

작은 허술함이 가져올 피해는 너무나 엄청나기에 30만 양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차원의 대응체계수립이 1%의 오류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재해 방지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고 시민들의 관심도 더불어 높아졌습니다. 최근 읍면동 순회

간담회에서 빈번히 이 사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시에서 시민들에게 방안을 제시하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를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대답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2015년 1월 26일 의원협의회에서 우리는 방사선 비상 계획구역 설정 검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것은 방사선 비상 계획구역 설정 후에 검토해 보겠다. 모든 기준은 부산광역시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고 모든 처리는 도에서 결정하는 것을 따르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모든 처리의 첫 시발점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이 12월 23일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한달이나 지연된 상태에서 보고를 해왔고 2월까지 제출해야한다고 시간의 급박함을 함께 알려 왔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원전 사고발생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시민에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에 따른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우리 의회와 시민단체의 수차례 요구에도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시킬 수 있다는 논리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공청회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동행 선도양산을 이끌고 계신 시장님의 철학과 일치한다고 보십니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라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핑계를 대서는 안됩니다. 조금 늦더라도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처럼 용역결과나 시민 공청회를 통해 과학적 근거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방재 대책을 내어놓아 안전한 양산을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시장님의 시정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동안 시의회에서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원전1호기 폐쇄를 위해 건의안도 채택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는데, 고리원전1호기 폐쇄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3년간 일반재해가 아닌 방사능과 관련해서 수립된 예산이 있는지와, 있으시다면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방사선 비상 계획구역 설정에 관련된 양산시의 검토 의견과 설정 후 비상 계획 수립 및 매뉴얼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에서는 공청회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불안감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더욱 더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신지요, 그리고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불안감과 갈등을 조성하기 위해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나동연 시장

2015년도 들어와서 첫 번째 임시회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한옥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예경 의원께서 원전에 대한 안전관계를 진단하는 시정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크게 네 가지 건으로 해서 물었는데 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드리면서, 우리 시에서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왜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무엇보다 시민이 안전에는 위해를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안전한 양산 만들기에.

특히, 원전에 관계되는 안전은 어느 무엇보다, 우리 시에서도 우선되는 정책으로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호기 폐쇄에 대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1호기 폐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원전가동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가가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닙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안전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전문가를 통해서 원전에 대한 주기적인 성능검사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식적인 결과 발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안전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만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절대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의 입장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방사능방재 예산에 대해서 얼마의 예산을 했느냐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1년과 2015년에 698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시는 안전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특별한 필요성이 없었기에 그렇게 되었고 말씀을 드리고, 올해 예산으로는 행동요령에 대한 유인물 제작비로 해서 2015년도 예산에 1,95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중앙에 무인방사선측정기 8대 설치비용을 요구했습니다.

2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이번에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 부분에 대한 추진건은 “계속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건은 2014년 5월에 법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단일구역 원전 반경 8km에서 10km의 범위를 이제는 20km에서 30km로 2014년 5월부터 해서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는 효율적인 방재계획과 그리고 주민보호 조치에 대한 효율성과 또 그리고 주민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비상계획구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현재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긴급보호조치구역 또 후쿠시마 사고시의 소개범위, 부산시 자체용역 결과에서 나오는 권고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나온 권고거리 이것이 전부 종합적으로 20km정도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금정산과 천성산 그리고 정족산을 경계 구역으로 하게 되면 21km에서 22km 정도의 이러한 범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구도 용상 주민이 되겠습니다만 9만 3,000여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거리가 합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검토의견과 그리고 시의회에서 통일된 의견, 또 민간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견 이런 부분들을 모두 같이 종합해서 우리 시에서 입장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과정에 들어가서 경남도에서 비상계획구역과 관련되는 사항, 그리고 부산시의 의견, 그리고 울산시의 의견, 그

다음에 원자력위원회 의견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 개 시·도와 우리 기초지자체가 함께 의견을 모아서 가야될 이런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의견 수렴 과정도 읍·면·동 순방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그동안 청취해왔습니다.

지금 시의회에서 시민공청회 개최건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말없는 다수의 시민들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안전을 담보로 하는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우리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사선 비상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또 그리고 세계 각국의 비상계획구역 범위에 대한 적용 사례,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례들을 같이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부터 부산시청에서 우리 시와 부·울·경 광역시에 관계되는 분들, 또 그리고 김해시, 울주군, 기장군 이렇게 해서 최적의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현재 만나서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협조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의견을 잘 모아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예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민호선수 야구장 절차대로 진행돼야”

제137회 임시회 **이기준** 의원



강민호 선수는 양산시에 야구장 건립을 위해 2억원을 기탁하고 양산시와 야구장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오고 있는 원동야구부와 올해 창단 예정인 물금고등학교 야구부가 있음에도 정규 규격의 야구장이 없는 양산의 열악한 현실에서 강민호선수의 야구장 건립을 위한 기탁 소식은 앞으로 양산시 야구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기에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시정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질문 드립니다.

이전부터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질타하여 왔으나 또다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사전 의결 없이 협약 체결 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 의결사항) 제1항 8호에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민호 야구장은 200석 규모의 간이 관람석, 본부석, 이동식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강민호 선수의 기탁금인 2억원 외 부족분은 시비로 충당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는 시의 의무부담으로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판단되나 사전 어떠한 설명도 없이 언론을 통하여 강민호 야구장 건립을 위한 협약체결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은 평소 의회와의 협력을 말씀하시는 시장님의 행보와 배치된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강민호 선수의 양산시 야구발전을 위한 후원과 협력은 양산시 청소년 야구단 육성과 양산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협약 체결 전 의회의 역할을 고려한 행정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협약체결과 관련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현재 야구장 건립 사업비는 우리시 예산에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부족한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여 사업 추진할 것인지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민호 야구장의 명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민호 야구장의 명칭은 기부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현하고자 선수의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현역야구선수로서는 최초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 일부를 기부하였는데도 강민호 야구장이라 명칭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문제와 기부의 취지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명칭 공모를 통하여 야구장 명칭을 정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데 강민호 야구장 명칭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명칭 사용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야구장 건립 장소가 낙동강 변 황산체육공원내 위치하여 여건상 고정식 시설 설치가 곤란하여 이동식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면, 좌·우측 펜스 각각100m, 중앙 125m의 펜스와 200석 규모의 관람석 등, 이동식 시설 설치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이동식 시설의 설치와 운영방법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답변 : 나동연 시장

먼저, 강민호 선수께서 지난 12월 30일자 허구연 야구발전 실행위원장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강민호 선수의 기부건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7일자로 강민호 선수가 우리 시를 방문하고 협약 체결을 하고, 1월 12일자로 기부자의 기탁서를 제출하고, 1월 15일 양산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쳤습니다.

이 건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에 대한 절차를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

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부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1월 8일자로 예정되어 있는 출국일자가 잡혀 있었고, 그리고 1월 7일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까지는 비밀에 붙여달라는,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도 그렇고, 언론 공개도 사전에 됨으로 해서 기부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이런 뜻이 담겨서 기부자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실 성립전예산 편성과도 거의 비슷한 형태다 보니까 매칭사업으로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인식을 해주시고, 사실 의회에서 “잘 되었다.”라고 칭찬해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절차를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로 인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필히 절차이행을 꼭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이 건에 대한 협약 체결과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의회의 협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한 스포츠마케팅의 효과는 앞으로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강민호 선수 이전에 우리 시에서 추신수와 조인을 해서 한번 하려고 사실 추진을 했습니다.

유명 선수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추신수 선수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되는 과정에서 일이 추진되지 못하고, 이게 강민호 선수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강민호 선수에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민호 선수의 이름을 쓰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국내에도 그와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보충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라든지 WBC대회 은메달리스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야구선수들의 이름을 딴 것도 그렇고, 그 외 우수선수들과 유명 선수들의 이름을 정해서 체육관을 짓고 한 부분들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래의 뜻을 살려서 강민호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 시킴으로 해서 앞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야구장 설치와 운영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건은 이 지역에 빈도수는 상당히 낮습니다만 한 100년, 50년 정도 빈도에 한 번씩 침수가 될 수 있는 이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동식으로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받고, 전문가와 잘 상의를 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기존 둔치에 2개 면의 야구장과 더불어 앞으로 전지훈련을 올 수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앞으로 양산이 전지훈련장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구꿈나무 양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아주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재활 치료서비스 계속돼야”

제137회 임시회 **임정섭** 의원



우리는 10년 간 운영해 온 종합사회복지관 내 장애아동재활 치료 서비스를 오는 6월에 종료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터는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지역에 한 시적으로 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것인데, 오는 4월 양산시 장애인 복지관 개관이 예정되어 있어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총 3억 1천만원의 예산가운데 도비는 6천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2억 5천만원이 시예산으로 충당되는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관은 성인과 아동이 함께 받는 장소로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장애아동이 500명이 넘으며 이 재활 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동은 118명이지만, 이 치료를 받기 위해 수개월을 대기하고 있고 장애아동과 상담조차 못 받고 있는 상담대기자까지 200명이 넘습니다.

양산시가 2005년부터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 복지센터운영을 위탁하였고 재활 치료서비스는 장애인 복지센터 사업으로, 만 18세 이하 장애아동이 대상입니다. 현재 물리·언어·심리·인지·수중물리·작업 등 6과목 10개 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종합 사회 복지관내 사업의 폐관으로 인해 발달지원서비스가 70%가 축소되는 격입니다

양산시는 장애인복지법 제18조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의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적절한 발달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산시는 장애인 복지센터의 개관으로 인해 사각지대 없이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나 더 축소됨은 복지사업의 후퇴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 법에 근거하여 우리는 장애인들에게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게 되어있으며 적극적으로 도와야할 의무가 있습

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추경예산에 발달 재활서비스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만약, 예산을 편성치 않을 시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18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3항을 근거하여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의료법 제33조 1항 및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 업무범위 등) 규정에 의해 물리·작업치료사는 의사의 지도없이 행한 재활 치료행위는 불법 행위임을 주장하였는데 불법 행위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경남도와 보건복지부 질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주장하는 불법 의료 행위와 예산을 거론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의 2 제3항에도 어긋나고 우리시의 조례에도 위배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언제까지 우리시가 공무원들의 편위에 맞는 해석과 잘못된 판단에 시민이 울어야 합니까?

장애를 가진 부모들의 피토하는 심정으로 읍조를 할 때 관계 공무원의 우리시의 자랑인 부산대학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선도양산을 지향하는 양산시 공무원의 시민 응대 방법입니다.

다시 한 번 본의원이 바라는 바, 장애인 부모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하고자하는 노력이 있다면 분명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이와 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며 우리시가 주장하는 불법행위로 판단하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집행부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라고 보여지며 읍면동 시정간담회에서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서는 시민을 아끼는 마음으로 해결

방법을 고민하시어 위의 법령을 근거로 추경예산에 이 안건의 예산을 편성하시어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을 만드시길 기대합니다.

답변 : 나동연 시장

오늘 질문을 받으면서 “의회와의 소통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제 나름대로 자책을 이렇게 해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에 대한 열정과 또 그리고 원칙과 법을 지키고자 하는 데서부터 발생되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장애아동들한테 어려움을 초래하는 이런 문제로만 비치면서 이것이 결국은 의회에까지 이 문제가 확대되도록 만든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느낍니다.

어제 제가 학부모들하고도 간담회를 했었고, 그리고 복지관에도 직접 가서 치료사들도 만나고 아동들도 만나고 왔습니다.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을 만들면서 우리가 좀 더 잘하고자 했던, 또 그러면서 원칙과 법의 어떤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하고자 했던 이것이 결국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올해 당초예산에다가 절반만 편성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정섭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저 역시도 어제 실태를 보고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더 나은 이런 아동복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했습니다.

어제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시정 추구를 이렇게 시켰고, 아마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의회의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기본입니다.

기본인 것이고 또 고비용과 그러면서 비효율적인 이런 부분

을 개선하고자 하는 충정이 이렇게. 거기에 사실은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결론은 우리 장애아동들에게 아픔을 주는 이런 쪽으로 이제까지 나와 있는 결과밖에는 없어서 얼마든지 보완을 할 수 있는 쪽에서의 대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 의원께서 제시하는 부분에 대한 추경예산 확보하는 부분을 비롯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을 운영을 하면서도 우리가 더 나은 장애인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다.

우리 시가 복지양산을 추구하고 있으면서 기존 하고 있던 데에서 후퇴되는 정책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 하는 부분으로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산시 무상급식 실시해야”

제138회 임시회 **차예경** 의원



학교급식법 제6조 1항에서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1조 3항에 있어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으로써 단순히 배고픈 학생에게 밥 한끼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고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 도움을 주며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면서 생산자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홍준표도지사가 2015년도 경상남도 무상급식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고 우리 양산시도 동참의 뜻을 밝히면서 무상급식 정책이 좌초위기에 이르렀고 일선학교와 학부모들이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나동연시장님도 6.4 지방 선거와 현장방문을 통해서 무상급식 확대 시행하기로 시민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약속을 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불가피한 상황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산시는 구체적인 설명과 양해 없이 경상남도 시군 중에서 무상급식 무산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맨 처음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슬로건 아래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강력하고 애절하게 ‘차별없는 공부가 아닌 밥을 달라’는 요청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때, 양산시는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경상남도 조례도 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 시민들의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경상남도의 무리한 행정에 동참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양산시는 전체 대상자중 81%에 달하는 시민들이 신청하여

수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한 조례이며 보건복지부와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 승인을 하지 않고 있어 대상자 선정 시 재산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없고 부당 수급자를 가려낼 방법이 없어 세금이 낭비되고 이중 지급될 소지가 많습니다. 양산시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경남교육청의 교육복지 정책사업과의 유사·중복 지원에 따른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가정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적 사업 그리고 교육적 가치와 전문성이 결여된 사업입니다.

이번 경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있어 나동연 시장께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찬성하였으며 타지역보다도 적극적으로 신청서를 받아 빨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의 의안 철회 요청으로 심의가 미루어 지고 있습니다.

양산시의 학부모님들은 애끓는 심정으로 맨처음 시청앞 광장, 도의회에서 있었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반대운동, 도청앞에서의 경상남도지사를 향한 읍소, 시의회 앞에서 단식 농성, 지역 행사의 참석해서 시선끌기, 학부모 집에 무상급식 지키기 플래카드 걸기 등 많은 활동으로 무상급식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과 시민들의 소리를 잘 듣고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양산시의원들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당을 떠나서 다수의원들의 합의로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관된 정책결정으로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시장님과 시의원인 저희의 책무입니다. 시장님의 고유권한인 예산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오니 나동연 시장님께서 서민자녀 교육지

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거부하시고 무상급식과 관련된 정치적 내지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 나동연 시장

오늘까지 벌써 무상급식과 서민자녀에 대한 교육지원건으로 해서 여러 차례 똑같은 이런 형태의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생활정치의 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8년간 의회생활을 하기도 하였고, 이에 생활정치라 하면 행정과 정치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학부모들까지도 방청을 하고 계신데 이번 시정질문 같은 경우에는 다분히 정치적이면서도 혹시나 선동적으로 비치지는 않을까 아주 우려를 하면서 안타깝게도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여러 차례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서 얘기가 있었던 바이기도 하고, 그리고 5분발언을 통해서도 똑같은 형태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1년도에서부터 도에서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4년간에 걸쳐서 무리 없이 이행을 해왔더랬습니다.

2015년도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과정까지는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실 것이고, 여기에는 행정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물론 2011년도부터 시행을 할 때 우리 시에서는 시장으로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얘기를 한 바가 있었고, 무상 포퓰리즘이라고까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로써 충당되어야 될 부분도 20% 이상까지는 못한다고 의견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40%까지 부담을 하고, 2014년 같은 경우에는 37.5%를 부담해서 무상급식을 그동안 운영

을 해왔던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무상급식이 중단되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이에 대한 대체사업으로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하는 것으로 도에서 의사결정을 하면서 우리 시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양산시서민자녀교육지원에 대한 조례를 현재 상정했다가 철회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아직까지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어제 경남도 18개 시·군에서도 의장단 회의를 하면서 경남도가 같이 가는 것으로 의장단에서 의견조율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상급식과 서민자녀 이 부분을 우리 시민의 총의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회도 그렇거니와 시장의 역할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총의를 모으고 또 거기에다가 특히나 양극화로 가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갈등과 분란이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의회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을 이렇게 내면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내를 가지면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렇게 해서 잘 만들어가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지난번 차예경 의원께서도 또 무상급식에 대한 시정질문을 주셨고, 5분발언도 주시고 해서 여러 차례 무상급식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표명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회와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무상급식정책을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차예경 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신 무상급식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안 및 결의안

제1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처리일자 : 2015년 2월 13일

고리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에 따른 시민 의견수렴 촉구 건의문

발의의원

한옥문 의원 / 정경호 의원
박일배 의원 / 김효진 의원
이상정 의원 / 박말태 의원
이재화 의원 / 이호근 의원
김정희 의원 / 이종희 의원
이상걸 의원 / 임정섭 의원
이기준 의원 / 박대조 의원
이정애 의원 / 차예경 의원

2011년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유출의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고리원전과 인접한 양산시민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고리원전과 양산지역은 거리가 불과 10km 안팎으로 지역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위험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1978년 우리나라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원자력1호기는 수명 30년이 지났으나 2007년 10년 연장운행을 시작하여 아직도 가동 중에 있는데 최근 크고 작은 여러 원전 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하여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등 안전관리와 사고 대처에 총체적인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원전사고는 일단 사고가 나면 통제가 불가능하며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30만 양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유사시 대응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은 원자력시설 방사선 비상 및 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듯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원전사고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양산시는 원전 사고발생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시민에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에 따른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의회와 시민단체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시킬 수 있다는 논리와, 2월초까지 경남도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시간부족을 이유로 들며 공청회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타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비상계획구역 설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시민 공청회도 하고있고 읍면동을 순회면서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강 건너 불 보듯이 주민에게 알리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수방관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이런 행정이 행복한 동행 선도양산의 행정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에, 양산시의회는 시민에게 방사능의 위험성을 알리고 비상계획구역 설정 의견 수렴시 시민을 무시한다는 오명을 낳지 않고, 또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실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원자력 비상계획구역 설정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뿐 만 아니라 우리후손들에게 까지 관련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결정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처리일자 : 2015년 4월 27일

고리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0km 설정 촉구 건의문

발의의원

한옥문 의원 / 정경호 의원
박일배 의원 / 김효진 의원
이상정 의원 / 박말태 의원
이재화 의원 / 이호근 의원
김정희 의원 / 이종희 의원
이상걸 의원 / 임정섭 의원
이기준 의원 / 박대조 의원
이정애 의원 / 차예경 의원

우리 양산은 고리원전과 불과 10km 안팎으로 접해있어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유출의 엄청난 피해를 간접적으로 느껴 온 양산시민들은 방사능 사고에 대해 항상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전사고는 일단 사고가 나면 통제가 불가능하여 그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을 위해 그 동안 양산시가 해 온 결론 도출 과정을 지켜보면서 양산시민들의 불안감이 날이 갈수록 크지고 있으며, 30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에 직면해 오고 있습니다.

원전 비상사태 발생시 위험 지역이 광범위하므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 설정해야 한다는 우리 시의회와 주민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시되었지만, 양산시는 그 동안 최소범위를 고수해 온 논리와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통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의 입장만 대변한 결과를 지난 3월 경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비상계획구역 설정시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들어 추진해야 마땅하지만 시민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여 30km로 의견을 제출한 울산시와 너무나 비교되는 행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양산시에서 제출한 21~22km 범위와 울산시에서 제출한 30km 범위 사이 양산과 울산 경계구역에 있는 양산시민들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철저히 무시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양산시가 주민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양산시의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울산시와 같은 최대 범위인 30km로 비상계획구역 설정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계최대 원전 밀집지역인 고리원전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최소한으로 설정하려는 시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0km의 확대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안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본부는 이와 같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고 일방적인 지자체의 의견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0km 설정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기본과제라 인식하고 최대한의 범위로 설정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우리 양산시민의 요구사항임을 감안하여 30km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건의안 및 결의안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처리일자 : 2015년 4월 27일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활용 촉구 건의문

발의의원

한옥문 의원 / 정경호 의원
박일배 의원 / 김효진 의원
이상정 의원 / 박말태 의원
이채화 의원 / 이호근 의원
김정희 의원 / 이종희 의원
이상걸 의원 / 임정섭 의원
이기준 의원 / 박대조 의원
이정애 의원 / 차예경 의원

부산대학교는 2000년 10월,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부지로 양산 신도시(물금읍)를 선정하고 1,106,889㎡(33만5천평) 부지에 대학·병원단지, 실버 및 첨단산학단지 조성하기로 하고 의학전문대학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어린이병원 등을 차례로 착공하여 2008년 11월 개원하였습니다.

개원 이후 양산 부산대학병원은 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어린이병원, 치과병원, 재활병원을 개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어 명실공히 지역의 의료 중심으로써 인근 시 뿐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환자들이 찾는 병원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양산부산대학교 인근은 대단지 아파트와 상가가 조성되고 있는 신도시로써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왕래가 잦은 곳으로 양산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의료서비스 중심이 될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입주한 인근 아파트 주민은 물론 양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병원 대학단지를 제외한 16여만평의 황무지로 방치된 잔여 부지는 큰 실망과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조성계획에 따르면 152,031㎡(4만6천평) 규모의 실버산학단지와 390,349㎡(11만8천평) 규모의 첨단산학단지의 부지가 연약지반이라 지반 개량공사 준공을 2018년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체33만5천평의 부지중 절반에 해당하는 16만여평의 거대 부지는 빈공터로 방치되어 가속도를 내며 성장하고 있는 물금신도시 중심에서 도심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다량의 비산먼지, 각종 쓰레기 투척, 청소년 탈선장소 등 각종 사건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산대학교는 부지조성에 대한 계획만을 세우고 예산부족, 투자유치 실패 등을 이유로 10년이 지나도록 성과를 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부산대학병원 유치에 위해 노력하고 환영한 양산시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일일 것입니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16만여평의 빈공지를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시간만 흐르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양산시와 시민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대학교는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는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 세워 시와 시민들에게 통보하고 지역사회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둘째, 부산대학교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하여 시민의 불만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셋째, 부산대학교는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공터를 방치할 경우 토지원소유주인 LH에게 반환하여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수립, 신도시 위상에 걸맞는 개발을 추진하게 하라.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처리일자 : 2015년 4월 27일

양산 사송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 시행 촉구 건의(안)

발의의원

한옥문 의원 / 정경호 의원
박일배 의원 / 김효진 의원
이상정 의원 / 박말태 의원
이채화 의원 / 이호근 의원
김정희 의원 / 이종희 의원
이상걸 의원 / 임정섭 의원
이기준 의원 / 박대조 의원
이정애 의원 / 차예경 의원

양산시의회는 사송보금자리 주택건설 사업을 8년이 지나도록 착공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처사에 대하여 실망과 분노를 느끼며 사송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LH는 자본금 30조원 전액을 국민의 혈세로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된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기업으로,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하고 있으며, 국민중심의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기업으로서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LH는 2007년 7월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 계획 승인을 받고 양산시 동면 사송리 내송리 일원에서 2,766천㎡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여 2010년 하반기에 토지 매입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추진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공익성을 우선하여야하는 공기업의 역할 보다는 이윤추구에 집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동면 사송, 외송, 내송 마을은 500여년의 전통을 간직하고 풍부한 생활을 이어 온 평안한 마을이었으나, 정부의 일방적인 보금자리 주택건설 사업을 위한 택지개발로 마을은 사라지고 방치된 농토에는 무성한 잡초와 쓰레기들이 산적하며 우범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슬럼화를 유발 시키는 악재로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양산시는 물금지역 대단위 아파트입주와 산업단지 조성으로 가파르게 인구가 증가하여 인구 30만의 중소도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3월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기본계획을 승인·고시하고 2020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6개월간 시험운전을 거쳐 2021년 1월 개통 한다는 양산시 도시철도 건설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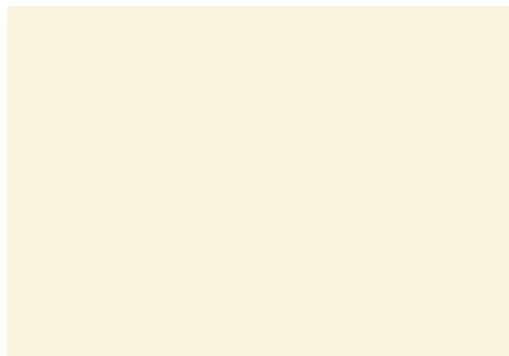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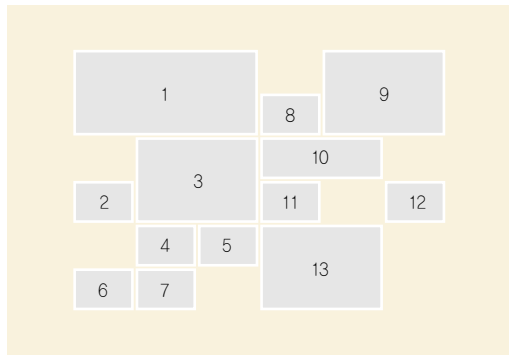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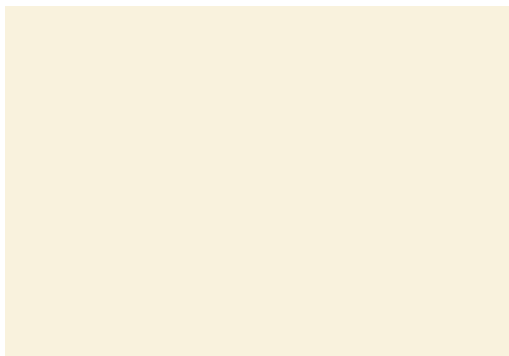
양산 도시철도 건설은 대도시를 연결하고 부산도시철도 순환선 역할을 통해 도심상권의 확장효과와 함께 침체된 양산시 경기에 활력소가 되면서 양산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LH는 이러한 양산시 도시성장의 시대적 상황을 직시하고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은 사송보금자리 주택건설에 대해 자금난을 이유로 더 이상 미루는 안이한 생각을 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하루 속히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추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LH는 자사의 경영이념에 바탕하여 양산시와 양산시민의 편에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며 시민의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8년 동안 방치된 양산시 동면 사송리, 내송리 일원 사송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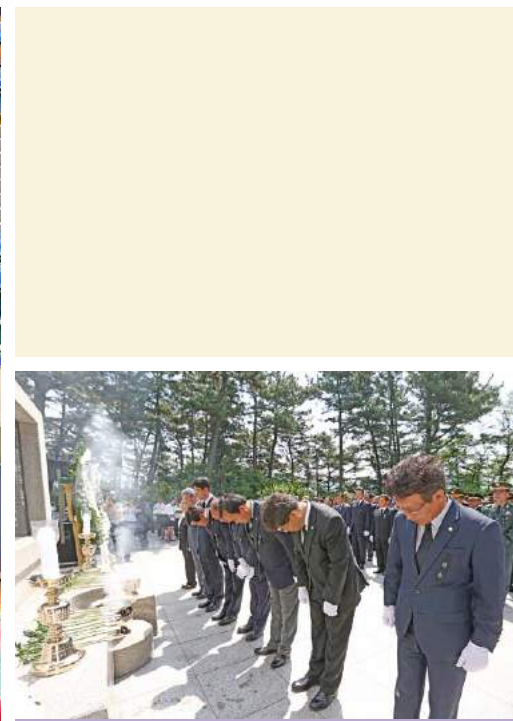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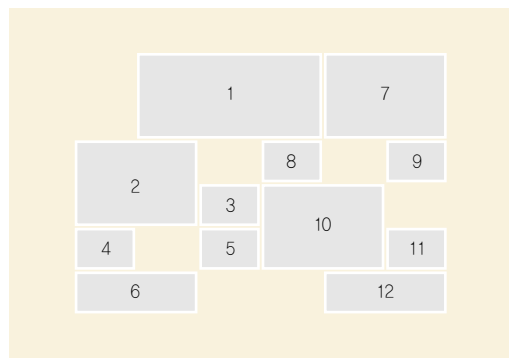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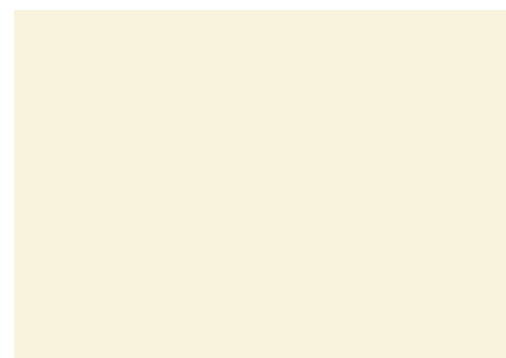
의정활동 이모저모



- 1 사무식
- 2 신년기관방문
- 3 응상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준공식
- 4 실내야구장개관식
- 5 물금읍승격19주년읍민건강달리기대회
- 6 설명절위문품전달
- 7 복지재단개소식
- 8 원동매화축제
- 9 정월대보름
- 10 응상중앙병원개원식
- 11 충렬사제향봉행
- 12 식목일기념행사
- 13 삼일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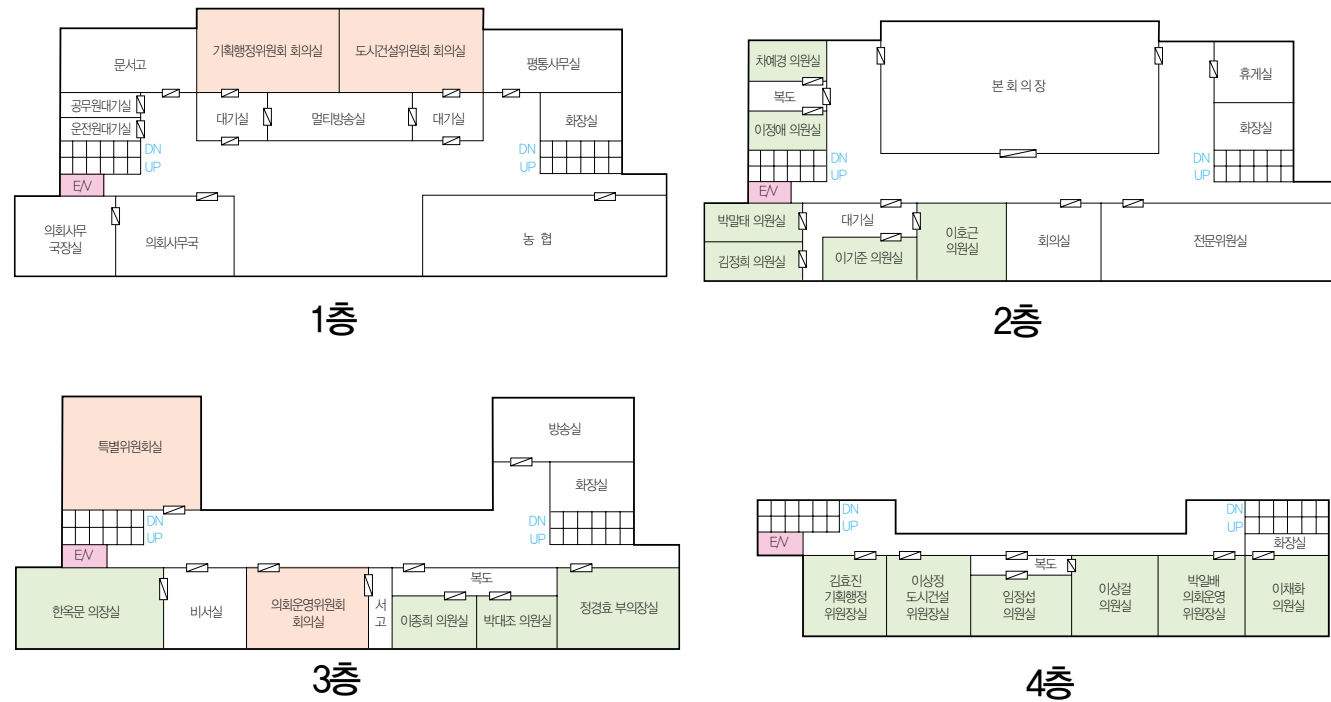
의정활동 이모저모



- 1 유채꽃축제
- 2 제5회새마을의날기념식
- 3 경남시군의회체육대회
- 4 제주도의정연수
- 5 어린이날 행사
- 6 제35회양산시장애인의날
- 7 가야진용신제
- 8 청소년한마음축제
- 9 웅상화야제
- 10 경남도민체육대회결단식
- 11 현충일
- 12 덕계동사무소개청식



의회 청사배치도



열린의회, 시민과 함께 호흡합니다



시의회 회의 생방송 시청 안내

양산시의회 회의를 생중계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열린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회의를 실시간 중계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시스템을 갖추고 시민에게 또 한 걸음 다가서게 됩니다.

www.yscouncil.go.kr



한옥문 의장 392-8500 의정부속실 392-8502~5 정경효 부의장 392-8510
의회운영위원회 박말배 위원장 392-8520 기획행정위원회 김효진 위원장 392-8530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정 위원장 392-8540
박말태 의원 392-8549 이재화 의원 392-8563 임정섭 의원 392-8547 이종희 의원 392-8557 김정희 의원 392-8545
이호근 의원 392-8551 이상걸 의원 392-8543 이기준 의원 392-8553 박대조 의원 392-8555 이정애 의원 392-8559 차예경 의원 392-8561
사무국장 392-8600 의정담당 392-8611~5 의사담당 392-8621~4 FAX 392-8619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392-8650,8652~3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392-8660,8662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392-8670,8672 FAX 392-8679



모바일 생중계를 보려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live.yscouncil.go.kr/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